

碩士學位論文

# 歐洲經濟統合과 韓國의 對應

文 大 者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1990年 6月



# 歐洲經濟統合과 韓國의 對應

The EC Ful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Korea

指導教授 金容正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0年 6月 日

漢城大學校 經營大學院

經營學科 企業管理 專攻

文 大 者



# 論文認准書

文大者の 經營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0年 6月 日

審査委員長 金 平 光 

審査委員 金 容 正 

審査委員 姜 錫 中 



# 目 次

|                                       |    |
|---------------------------------------|----|
| 第 1 章 序論 .....                        | 1  |
| 第 1 節 研究의 目的 .....                    | 1  |
|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               | 4  |
| 第 2 章 歐洲共同體의 役割 .....                 | 5  |
| 第 1 節 EC의 特性 .....                    | 5  |
| 1. EC의 性格 .....                       | 5  |
| 2. EC市場의 特性 .....                     | 6  |
| 第 2 節 EC의 機構와 機能 .....                | 8  |
| 第 3 章 EC 歐洲經濟統合이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 .....   | 13 |
| 第 1 節 EC歐洲統合의 推進背景과 內容 .....          | 13 |
| 1. EC歐洲統合의 推進背景 .....                 | 13 |
| 2. EC歐洲統合의 主要內容 .....                 | 18 |
| 第 2 節 歐洲統合에 따른 韓・EC通商關係에 미치는 影響 ..... | 26 |
| 1. 肯定的인 側面 .....                      | 26 |
| 2. 否定的인 側面 .....                      | 27 |
| 3. 韓國 對EC 輸出 .....                    | 27 |
| 4. 韓國의 對EC 輸入 .....                   | 28 |
| 第 4 章 韓・EC 通商現況과 問題點 .....            | 29 |
| 第 1 節 韓・EC 交易概況 .....                 | 29 |



|                           |    |
|---------------------------|----|
| 第 2 節 韓・EC 會員國別 輸出入 現況    | 33 |
| 1. 輸出現況                   | 33 |
| 2. 輸入現況                   | 34 |
| 第 3 節 韓・EC 主要 品目別 輸出入 現況  | 36 |
| 1. 輸出現況                   | 36 |
| 2. 輸入現況                   | 37 |
| 第 4 節 對EC 通商增進上의 問題點      | 39 |
| 1. EC의 對韓 輸入規制 및 반덤핑 提訴現況 | 39 |
| 2. EC의 對韓 市場開放壓力 現況       | 42 |
| 3. 問題點                    | 43 |
| 第 5 章 EC의 通商政策과 韓國의 對應    | 45 |
| 第 1 節 EC의 通商政策            | 45 |
| 1. EC의 通商政策基調             | 45 |
| 2. 最近의 EC 通商政策            | 48 |
| 第 2 節 韓國의 對應              | 53 |
| 1. EC의 重要性 認識             | 53 |
| 2. 對EC 交易의 均衡化 推進         | 53 |
| 3. 輸出競爭力 提高               | 54 |
| 4. 企業의 現地化 戰略 擴大          | 56 |
| 5. EC 通商專門人力의 養成 및 確保     | 58 |
| 6. 東歐共產圈 共同進出 摸索          | 58 |
| 第 6 章 要約 및 結論             | 60 |



|               |    |
|---------------|----|
| Summary ..... | 63 |
|---------------|----|

|            |    |
|------------|----|
| 参考文献 ..... | 67 |
|------------|----|



## 表 目 次

|                                              |    |
|----------------------------------------------|----|
| 〈表 3-1〉 EC各國의 規模(經常) .....                   | 15 |
| 〈表 3-2〉 EC의 經濟力 比較(1987年) .....              | 15 |
| 〈表 3-3〉 各國別 VAT의 比較 .....                    | 25 |
| 〈表 4-1〉 韓國의 對EC(10個國) 輸・出入實績 .....           | 30 |
| 〈表 4-2〉 EC國家의 對韓國 投資現況(許可基準, '88年末 現在) ..... | 32 |
| 〈表 4-3〉 우리나라 對EC 投資現況 .....                  | 32 |
| 〈表 4-4〉 對EC 會員國別 輸出現況 .....                  | 33 |
| 〈表 4-5〉 對EC 會員國別 輸入現況 .....                  | 35 |
| 〈表 4-6〉 對EC 主要 品目別 輸出現況 .....                | 37 |
| 〈表 4-7〉 對EC 主要 品目別 輸入現況 .....                | 38 |
| 〈表 4-8〉 韓國의 對EC 主要國 輸入規制下 輸出 .....           | 40 |
| 〈表 4-9〉 對韓 반덤핑 提訴推移 .....                    | 40 |
| 〈表 4-10〉 輸入規制調査對象 品目 .....                   | 41 |
| 〈表 5-1〉 EC의 通商政策 變化 比較 .....                 | 49 |
| 〈表 5-2〉 EC 海外直接投資時 考慮될 製品 .....              | 57 |



## 第 1 章 序論

### 第 1 節 研究의 目的

우리나라의 對外貿易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懸案課題는 美·日에의 지나친 偏重性으로 인한 貿易不均衡 深化 문제이다.

1986년도를 기점으로 對外 貿易黑字를 기록한 이래 兩大 市場과의 貿易摩擦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1989년의 경우 全體交易量중 對美輸出과 對日輸入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3.8%와 27.9%로서 절대적인 비중을 점하고 있어 對美 地域은 貿易收支黑字幅의 擴大와 함께 通商摩擦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輸出主導型 經濟成長政策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累積되어 온 이러한 偏重性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출입 시장의 多變化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EC시장은 우리 나라에 戰略적으로나 實質적인 의미에서 많은 利點을 주고 있다.

EC를 한 단위로 본다면 어떠한 의미에서는 國際經濟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다. 우선 인구면에서 1986년말 현재 327백만명에 이르러 世界 最大의 시장으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GDP는 3조 4,610억 달러에 달하였고 總輸出 7,960억 달러, 總輸入 7,810억 달러로 연간 1조 6천억 달러의 交易量을 기록하고 있으며 세계 輸入市場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 (1986년)은 37.4%로서 미국 18.8%, 일본 6.2%에 비해 EC가 세계 최대의 수입시장임을 立證해 주고 있다.

EC는 美國, 日本 및 아시아 NICs에 비해 그동안 상대적으로 沈滯되었던 經濟의 活性化를 圖謀하고 國際競爭力 回復을 위해 1992년까지 單一市場(Single Market) 추진을 위한 노력이 87년 이후 制度的側面 및 企業活動側面



에서 꾸준히 전개되고 있고, 88년 6월 14일 EC역내의 資本移動制限 撤廢에 합의함으로써 본 협정이 발효되는 90년 7월부터는 EC회원국간에 資本去來가 完全自由化되게 되었다.

현재 각 회원국들은 계속적인 經濟成長과 國際競爭力 提高를 위하여 대폭적인 産業構造의 改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첨단산업의 開發·發展을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며, 특히 美國이나 日本과의 價格競爭을 위해서는 規模의 經濟 擴大와 域內貿易障壁에 의한 비용의 절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와 같은 EC회원국들의 域內市場統合에 대한 필요성은 과거와는 다른 것이며,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92년도 계획에 대한 각 회원국들의 태도는 예상보다 아주 積極的이다.

EC 92년도 계획은 1992년말까지 域內 모든 貿易障壁들을 撤廢하여 완전한 共同市場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域內貿易障壁이 大幅 撤廢되면서 域外國家들에 대한 貿易政策 역시 대폭 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나라의 對外經濟關係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제가 市場 多變化라고 한다면 그 1차적인 대상이 EC지역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70년대 초 이래 EC지역과의 經濟去來를 강화한다는 시도가 전개되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인 의미에서 아직도 만족스러운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경제 블록으로서 EC시장은 域內交易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지만 단일 시장로서는 最大市場이며 購買力이 높은 고급시장인 점, 동구권 진출의 연계시장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經濟協力先 多變化를 위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 기업들의 대 동구 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배려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連繫貿易은 對EC 시장진출이 큰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한 先進諸國으로부터의 각종의 무역 규제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는 輸出增大에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으며, 동시에 市場



開放 壓力를 받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市場 多變化의 一環으로 한·EC간의 國際經濟協力은 물론 通商關係 增進에 획기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論文은 이와 같은 市場多變化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EC의 구주 통합 추진방향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이러한 歐洲統合이 한·EC간 通商關係에 미치게 될 肯定的인 영향과 否定的인 영향은 무엇인가를 분석한 다음, EC의 新通商政策方向과 한·EC간의 通商現況을 살펴봄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우리의 對應方案을 제시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



## 第 2 節 研究의 方法 및 範圍

本 論文의 研究 方法으로는 EC의 形成, 發展, EC의 特性과 機構와 機能 그리고 EC의 統合 推進方向등에 관하여 國內의 學術專門紙, 政府機關 및 關聯經濟團體 등에서 발표되는 관계서적과 연구논문을 통한 文헌적 研究方法에 주로 의존하였고, 한·EC의 通商現況은 國內·外 여러기관의 統計資料와 專門調査業體, 言論機關이 행한 설문조사를 참고하였다.

이러한 文獻과 資料를 기초로 한·EC간의 交易增大 方案을 講究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논문을 구성하였다.

第 2 章에서는 歐洲共同體의 役割을 EC의 性格과 市場特性 그리고 EC를 구성하고 있는 機構와 機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第 3 章에서는 EC 歐洲統合의 推進方向과 이러한 歐洲統合이 한·EC 通商關係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第 4 章에서는 한·EC간의 會員國別 輸出入 現況과 한·EC간의 품목별 輸出入 現況을 살펴 대 EC 通商增進上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第 5 章에서는 최근의 EC의 通商政策과 對韓通商政策의 變化를 알아보고 이러한 변화와 第 4 章에서 나타난 대EC 通商增進上의 문제점을 토대로 우리의 對應方案을 모색하여 보았다.

第 6 章은 結論으로 본 논문의 研究結果를 要約하고 앞으로의 研究方向을 提示하고자 하였다.



## 第 2 章 歐洲共同體의 役割

### 第 1 節 EC의 特性

#### 1. EC의 性格

일반적으로 地域經濟統合의 과정으로서 B.Balassa는 다음 네가지 형태로 그 發展 정도를 구분하고 있다.

첫째는 域內에서 關稅 및 非關稅障壁이 제거되어 域內 自由貿易이 이루어지는 自由貿易地域(Free Trade Area)이다.

둘째는 여기에다 域外 輸入商品에 대해 共同外部關稅를 실시하는 關稅同盟(Tariff Union)이다.

셋째는 域內 貿易自由화와 外部共同關稅만이 아니라 域內에서 生産要素의 自由移動까지 가능한 共同市場(Common Market)이다.

네째로는 經濟政策과 通貨까지 統合되어 經濟的으로 국경이 없어지는 經濟同盟(Economic Union)이다.

현재 共同市場과 經濟同盟의 중간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EC는 종래의 EEC와 ECSC 그리고 EURATOM의 執行機關이 合同해서 1967년 7월 成立되었다.

<sup>1)</sup> 당초 프랑스, 서독,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탈리아 등 6개국으로 구성되었던 EC는 1973년 1월에 영국, 아일랜드, 덴마크 등이 가입하였으며, 1981년에 그리스에 추가로 가입된 후 1986년 1월에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가입하여 會員國은 12개국으로 확대되어 막중한 經濟統合體가 되었다. 이와 같이 성립된 EC는 여러 機構에 의하여 그 機能 및 役割이 遂行되고 있다.

EC는 당초에 歐洲合衆國으로 건설하겠다는 政治적 目標로 출발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 따라 우선 가능한 經濟的 統合을 실현하기 위한 機

---

주1) 조덕구, "EC경제에 대한 연구", 경제과학 심의위원회, 1974, pp.7-15.



構로써 그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기도 했지만 피레네산맥을 넘어 리베리아반도까지 포함케된 範유럽기구이며, 世界 第一의 經濟權으로 성장 발전하여 왔다.

EC의 이와 같은 過程은 당초 EC가 순순히 經濟的 目的에서의 統合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라 政治的 統合의 方便으로서 經濟統合에 착수한데서 기인하는 것이며 따라서 EC는 經濟統合을 통한 歐洲의 政治的 統合으로의 移行이라는 過度的 性格이 강하며 經濟統合의 程度에 있어서도 共同市場이 완결되지 않은 狀態에서 經濟·通貨同盟으로의 移行을 추구하고 있는 단계라 하겠다. 經濟·通貨同盟이 經濟的인 問題에 관해서이긴 하지만 主權의 전반적인 移讓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限 이는 政治的인 문제와 구별될 수는 없으며 따라서 EC의 經濟·通貨同盟으로의 進전이 부진한 것도 당연한 일로써 이에 대해 政治統合과 經濟統合을 연관시키고 있는 EC의 장래 또한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2)</sup>

## 2. EC市場의 特性

EC市場은 첫째, 會員國이 12개국에 이르고 있지만, 美國이나 日本과 같은 單一市場의 性格을 강하게 띠고 있는 地域이다.

그 이유는, EC시장이 갖는 政治的, 歷史的 背景과 아울러, 國民經濟生活의 수준이 거의 동일하다는 點과 國境이나 稅關이 有名無實할 정도로 形式的으로 존재할 뿐이며 會員國間 旅行도 旅券이 아닌 身分證으로 마음대로 往來할 수 있으며, EC域內 自體間에는 자체 生産商品은 물론 輸入商品도 일단 域內에 들어오면 選別的으로 自由流通이 가능하여 EC전체가 하나의 單一市場의 性格을 띠고 있다.

둘째, EC市場은 1인당 消費用量이 매우 많은 편이므로 少量多品種의 輸入

주2) 국제경제연구원, “구주의 경제통합과 역내외 분업체계의 변천”, 1980, pp.5-6.



市場이며 去來의 保守性이 강하다. EC의 輸入商들은 일단 신뢰하고 去來를 하고 있는 業者와 紐帶關係를 지속하려는 習性이 강하여 새로이 EC市場을 개척하려는 輸出商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나, 반면에 기존 去來先은 좀체로 전환하지 않는 特性이 있다. 또한 EC輸入商은 대부분 取扱品目の 專門化가 이루어져 있으며 商品의 品質 購買先의 信用度, 商品의 專門性 등을 중요시 하고 있어 新規去來時에는 大量發走로 인한 信用危險을 줄이기 위해 少量購買를 택하고 있다.

또한 상담시에는 EC의 輸入商들은 分野別로 專門化되어 있어 사전에 相互 過當競爭을 예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取扱品目에 대한 專門知識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세째, EC市場의 消費者들은 商品價格에 집착하기 보다는 品質에 더 많은 關心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은 製品의 새로움, 獨特함, 多樣性 등을 중요시 하므로 美國이나 日本과 같은 市場에서는 쉽게 販賣될 수 있는 商品도 EC에서는 販賣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商去來도 地方分散도가 높아 百貨店, 小賣商을 통한 最終 消費層 接近이 매우 容易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네째, EC市場은 異民族間의 差異性이 존재하는데 對EC 進出시는 이를 고려해야 하는데 비교적 英國, 北歐 등 Anglo Saxon족은 信賴와 眞實性이 높은 國民이며, 西獨, 東歐, 스위스人들은 정확하며, 빈틈이 없고 自然法則처럼 法規를 엄격히 준수하며 카톨릭적 경향이 매우 높다. 또한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Latin系 國民은 信賴性이 매우 적어 믿고 去來할 수가 없을 정도로 融通性을 갖고 있다. 따라서 去來上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去來先은 German族系라고 볼 수 있다.



## 第 2 節 EC의 機構와 機能

EC의 기구로서는 閣僚理事會(The Council of ministers), 執行委員會(The Commission), 歐洲裁判所(The Court of Justice), 歐洲議會(The European Parliament), 歐洲投資銀行(EIB: European Investment Bank), 諮問委員會, 特別基金 및 附設研究所가 있다.<sup>3)</sup> 여기에서는 EC를 구성하는 많은 기관들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執行委員會, 官僚理事會, 歐洲議會, 歐洲裁判所の 기능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고자 한다.

### (1) 執行委員會(The Commission)

執行委員會는 9개국에서 선출된 13명의 委員으로 구성되어 執行權과 提案權을 갖고 있다.

각 위원은 각기 EC활동의 각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데 任務修行에 있어서 그들은 그들의 국가를 포함하여 어떤 외부로부터 干涉이나 指示를 받을 수 없다.

그 機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고 執行機關으로서 創設條約에 규정된 바를 시행하기 위하여 최고 意思決定機關인 官僚理事會에 적절한 형태의 법규를 提案하고 官僚理事會가 채택하는 법규에 따라서 각종 조치를 시행한다.

둘째, 共同市場의 正常的 機能發揮과 發展을 위해 제정된 各種法規를 會員國 정부와 EC역내의 모든 自然人, 法人, 그리고 그밖의 團體가 遵守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

셋째, 執行委員會는 對內的으로 EC或內市場을 고도로 통합하는 작업을 계속 推進하며, 對外的으로는 共同體들의 法人格을 대표하여 제3국 및 國

---

EC의 주요기구에 대해서는 다음자료를 참고하였음.

주3) 산업연구원, "EC 12개국의 현황과 현안문제", 1987.1월.

Donald T. Wils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T. PAUL: West Publishing.Co.), 1981.



國際機構와 條約을 締結하고 協商을 實施한다. 이에 따라 國際機構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EC 이익을 증진시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通商政策의 樹立과 施行에 있어서 執行委員會는 EC의 다른 기관에 비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즉 同 機構는 반덤핑조치, 補助金 相計措置 및 緊急輸入制限措置 등 EC 공동의 모든 通商政策手段의 草案을 作成하고 나아가 이러한 諸般措置를 시행할 권한을 갖고 있다.

그리고 EC의 共同通商政策을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執行委員會는 理事會의 기본방침에 따라 주도권을 掌握하여 제3국이나 國際機關과 通商協定을 벌이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通商規制에 관한 소송과정에서 직접조사를 시행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關稅賦課와 輸入制限과 같은 다양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의 독자적인 輸入規制措置도 사전에 執行委員會에 통보하여 그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對外通商政策에 있어서 執行委員會의 역할은 거의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 (2) 閣僚理事會(The council of Ministers)

閣僚理事會는 각 會員國으로부터 1명씩 派遣되는 각료들로 구성되는 意思決定機構로써 意思決定과 아울러 회원국간의 정책의 調整權도 갖고 있다.

閣僚理事會는 EC회원국들의 一般經濟政策의 조화를 확보하고, 決定權을 갖는 EC 최고 議決機構로써 권력의 핵심이다.

그리고 官僚理事會는 條約에 의거하여 필요한 法規를 제정하는데 일반적으로 執行委員會가 작성하여 제출한 法規草案에 대해 採擇與否만을 결정하게 된다.

또한 閣僚理事會는 執行委員會와 마찬가지로 條約規定에 따른 임무수행을 위해 規則, 命令, 決定과 권고 및 의견과 같은 다섯가지 형태<sup>4)</sup>의 의사

---

주4) 1.규칙: 모든 회원국에 시행과 동시에 법으로 적용되며 회원국의 국내법보다 위에 있다.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閣僚理事會는 執行委員會와 마찬가지로 EC通商政策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즉 EC通商政策의 시행에 근거가 되는 주요 법규들을 閣僚理事會가 의결하여 발효한다.

또한 同機構는 執行委員會가 제안하는 確定措置에 대해서도 단순히 채택여부만 결정할 뿐만 아니라 同措置에 대해 會員國이 적부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閣僚理事會의 의결을 통하여 이를 폐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반덤핑관세, 상계관세의 확정 및 부과뿐만 아니라 제3국의 不正貿易慣行에 대응하는 확정된 보호조치도 閣僚理事會의 의결을 거쳐야 시행할 수 있다.

### (3) 歐洲議會(The European Parliament)

歐洲議會는 9개국의회 대표단으로 構成되며 ECSC, EEC 및 EURATOM(The European Atomic Community)의 執行에 대한 監査權과 이들 세 共同體들의 직원에 대한 罷免權과 부분적인 立法權을 갖고 있다. 즉 歐洲議會는 執行委員會가 立法機關인 閣僚理事會에 法規의 草案을 제출한 경우 이 초안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채택하여 執行委員會나 閣僚理事會에 제시하는 일과 예산안을 심의하고 확정된 예산을 施行, 監督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EC의 共同通商政策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歐洲議會는 執行委員會나

- 
2. 명령: 명령은 명령이 내려진 회원국에 대해서만 그리고 달성되어야 할 결과에 대해서만 구속력이 있으며 그 시행방법은 수명국정부에 일임하나 일정한 기간내에 국내법의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3. 결정: 어느정부, 기관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모든 점에서 직접적으로 구속력을 갖는다.
  4. 권고 및 의견: 권고 및 의견은 설득력 효과만을 가지는 것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통상 어느 정책에 대한 집행위의 견해를 표명한 것이다.



閣僚理事會에 제시되는 의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EC의 政治的 統合의 경향이 점차 강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의 추세인데 이에 따라 歐洲議會의 權限과 機構도 점차 강화되어 왔다.

#### (4) 歐洲裁判所(The Court of Justice)

룩셈부르크에 위치한 歐洲裁判所는 9개국에서 파견된 9명의 판사들로 구성되며, 條約의 解釋權과 司法權을 가진다.

歐洲裁判所는 EC共同體의 創設條約과 이에 의거하여 제정된 법규의 최종 有權解釋을 내리고 EC의 여러 기구가 실시하는 조치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판결하며, 共同體 創設條約과 법규의 시행에 관련하여 EC역내의 個人, 法人, 機構, 會員國 정부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 (5) 歐洲投資銀行(EIB: European Investment Bank)

歐洲投資銀行은 非營利銀行으로써 역내의 균형있고 원활한 발전을 위해 投資資金을 融資 혹은 支給保障한다.

공동체 전역에 걸쳐, 특히 경제적으로 약한 지역의 발전을 위해 투자계획을 지원하고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즉 對外經濟協定을 통해 EIB는 비단 회원국만이 아니라 聯合協定體締結諸國<sup>5)</sup>, 마스레크 3국<sup>6)</sup>, 마그레브 3국<sup>7)</sup> 및 로메협정체결제국<sup>8)</sup>에 대해서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이다.

EIB의 재원은 각 회원국의 출자와 國際資本市場으로 부터의 대출로 마련되고 있다.

주5) EC의 대지중해구주국과의 협정으로 이들 국가와의 협정은 대체로 앞으로 이들 국가들의 EC가입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6) 이집트, 시리아, 요르단의 3국

7)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의 3국

8) EC 9개국과 1975년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지역도서국의 46개국 사이에 체결되었으며, 이는 EC 9개국과 그들의 구 식민지를 주축으로 하는 개도국 사이에 무역관계 등 경제협력관계를 유지강화하려는 협정이다.



#### (6) 諮問委員會(Consultative Committee)

EC는 經濟社會委員會(The Economic & Social Committee)와 ECSC諮問委員會(ECSC Consultative Committee) 및 農業諮問委員會(Agricultural Advisory Committee)라는 세개의 자문위원회를 갖고 있다.

經濟社會委員會는 使用者, 勞動組合 代表 및 消費者, 農民 등의 特別利益代表로 구성되어 있다.

EC의 經濟的·社會的問題 특히 農業問題, 노동자의 自由移動問題 및 法律과 訴訟에 관한 회원국간의 조정문제에 관해 理事會 및 執行委員會의 자문에 응한다.

ECSC諮問委員會는 石炭 및 鐵鑛業界의 生産者, 勞動者, 消費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執行委員會를 보좌한다.

農業諮問委員會는 16개의 품목별 전문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집행위원회를 보좌한다.

#### (7) 特別基金

EC의 特別基金에는 歐洲社會基金, 歐洲農業基金, 歐洲通貨協力基金, 歐洲開發基金 및 地域開發基金의 다섯가지가 있다. 歐洲社會基金은 會員國에 대해 노동자의 失業救濟費用의 50%를 지원해 준다.

#### (8) 附設研究所

EC는 4개의 原子力研究所와 1개의 社會科學研究所를 갖고 있는데 社會科學研究所로서는 歐洲大學研究所라 불리는 대학과 연구소의 두가지 기능을 함께 갖고 있는 기구가 있다.



### 第 3 章 歐洲經濟統合이 韓國貿易에 미치는 影響

#### 第 1 節 EC 歐洲統合의 推進背景과 內容

##### 1. EC歐洲統合의 推進背景

1958년에 발효된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은 EEC創設의 基礎가 되는 조약으로서 유럽공동시장을 완성하기 위한 具體的인 政策을 제시했다. 同條約은 회원국간 관세 및 非關稅障壁의 除去, 域外 共同關稅率 適用 및 共同通常政策의 구현, 회원국간 인력, 서어비스,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제한의 철폐 등 여러 가지 經濟政策이 공동으로 수립되어 시행되며, 회원국들의 經濟法規가 조화되어 있는 共同市場의 완성을 규정하였다.

1958년 EEC발족 이후 3단계에 걸친 域內關稅 및 輸入數量制限의 撤廢, 域外 共同關稅의 수립을 추진하여 1986년부터는 완전한 關稅同盟體로서의 기능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EC 각국간의 貿易을 크게 증대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였는바, 域外貿易은 1958-69년 기간중 연평균 16% 증대되었고, 세계무역에 대한 EC의 비중이 1958년 21.7%에서 1969년에 31.1%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域內産業의 投資와 기타 經濟活動을 크게 증대시켰으며 域內 소비자들의 實質所得을 크게 증대시켰다.

그러나 關稅同盟體로의 經濟統合이 일단락된 1969년 이후 EC회원국들의 EC統合에 대한 관심은 약화되었고 統合推進實績은 매우 부진하였다. 회원국들은 數量制限과 동등한 결과를 초래하는 조치에 의존하여 域內貿易을 제한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용역과 生産要素의 域內移動을 규제하여 왔고 그들 사이에 利害相沖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하여 共同政策의 시행에서 자주 차질을 일으켜 왔다. 그 결과 EC회원국은 과도기가 지난지 18년이 넘은 오늘날까지도 진정한 共同市場을 構築하지 못하고 있다.<sup>9)</sup>



經濟的으로는 70년대 2차례에 걸친 오일쇼크로 EC經濟는 美.日에 비해 두드러지게 침체되고 域內貿易量은 격감하였다.

실제로 EC는 1974년에서 1984년 기간동안 平均實質國內總生産(GDP) 成長率은 1.9%로서 日本의 3.7%, 美國의 2.4%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失業率도 同基幹中 10%를 상회하는 수준이 지속되었다. 특히 첨단기술분야에서는 EC에서 판매되고 있는 PC의 80%가 美國産이며, VT R은 90% 이상이 日本에서 輸入되는 등 美國과 日本에 비해 競爭力이 크게 뒤떨어져 있는 것이 지적되었다.

또한 GATT體制下의 多者間貿易協商(케네디라운드, 동경라운드)에서 이루어진 關稅引下措置 및 對開途國 GSP 공여 등에 의한 或内外 關稅格差로 或內交易量은 계속 減少되었다.

그러나 EC가 單一市場으로 統合되는 경우 GDP 規模에서는 1987년 基準으로 日本의 1.8배, 美國의 0.96배에 이르게 되며 交易規模面에서는 輸出은 世界全體의 40.4%, 輸入은 37.6%로 規模의 經濟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經濟的 潛在力에서는 美.日에 대항하는 거대한 經濟權을 形成하여 美.日이 주도하고 있는 世界經濟秩序 속에서 영향권을 높힐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주9) 손상익.이경숙, "EC 경제통합과 우리의 대응방안", 산업연구원, 1989, 9, p.35-36.



〈表3-1〉 EC國의 規模(經常)

(單位: 10억US달러)

|      | GDP 規 模 |         |         | 備 重 (%) |        |
|------|---------|---------|---------|---------|--------|
|      | 1987    | 1988    | 1992    | 1987    | 1992   |
| 서독   | 1,121.4 | 1,253.3 | 1,667.9 | 26.2    | 24.6   |
| 프랑스  | 881.4   | 1,014.5 | 1,374.5 | 20.6    | 20.2   |
| 이탈리아 | 758.6   | 868.6   | 1,288.5 | 17.7    | 19.0   |
| 영국   | 669.6   | 822.2   | 1,155.2 | 15.6    | 17.0   |
|      |         |         |         | (80.1)  | (80.8) |
| 스페인  | 285.0   | 343.6   | 413.2   | 6.7     | 6.1    |
| 네덜란드 | 210.2   | 236.3   | 318.3   | 4.9     | 4.7    |
| 벨기에  | 142.3   | 163.3   | 219.0   | 3.3     | 3.2    |
| 덴마크  | 101.1   | 110.9   | 144.9   | 2.4     | 2.1    |
| 그리스  | 47.1    | 61.4    | 81.5    | 1.1     | 1.2    |
| 포르투갈 | 36.1    | 43.2    | 83.8    | 0.8     | 1.2    |
| 에이레  | 30.5    | 34.3    | 42.6    | 0.7     | 0.6    |
| E C  | 4,283.2 | 4,951.7 | 6,789.4 | 100     | 100    |

註 : EC회원국중 룩셈부르크는 제외

( )는 4개국 합계(%)

資料: WEFA, World Economic Outlook, July 1988.

〈表3-2〉 EC의 經濟力比較(1987年)

|            | 單 位    | EC 12個國 | 美 國    | 日 本    |
|------------|--------|---------|--------|--------|
| 國內總生産(GDP) | 10억 달러 | 4,264   | 4,436  | 2,379  |
| 1人當 GDP    | 달러     | 18,183  | 18,198 | 19,488 |
| 實質成長率      | %      | 2.5     | 2.9    | 4.1    |
| 産業生産增加率    | %      | 1.8     | 3.7    | 3.1    |
| 失業率        | %      | 11.0    | 6.1    | 2.8    |
| 輸出(F.O.B.) | 10억 달러 | 955     | 253    | 230    |
| (或內輸出比重)   | (%)    | (58.7)  | -      | -      |
| 輸入(C.I.F.) | 10억 달러 | 946     | 424    | 150    |
| (或內輸入比重)   | (%)    | (58.7)  | -      | -      |
| 人口         | 백 만 명  | 323     | 244    | 122    |
| 面積         | 천 km   | 2,255   | 9,369  | 378    |

資料: IMF, IFS

한편 EC는 이러한 70년대 經濟的 沈滯가 EC統合의 不振에 있다고 보고



있다. 즉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에는 關稅同盟의 設立뿐만 아니라 EC시장권내의 모든 生産性 向上과 國民生活水準의 向上을 위해 勞動, 資本, 서비스 이동 및 企業設立의 자유화를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1969년말까지의 과도기간을 거쳐 1970년부터 완전히 실행하도록 조치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EC 共同市場을 형성하도록 그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EC 經濟統合의 부진으로 회원국간의 商品, 서비스, 勞動 및 資本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약하는 각종 非關稅障壁이 常存하여 왔고 地域共同體의 장점인 規模의 經濟活用, 競爭促進, 技術開發, 등이 미진하였다. 또한 EC회원국간 經濟協力不足으로 鐵剛, 船舶, 纖維 등의 역내 産業構造調整이 지연되고 R & D 투자의 중복에 따른 資源活用の 非效率性이 발생하여 이러한 제요인들이 對外競爭力 弱화, 經濟成長率의 鈍化 및 大量失業發生이라는 EC 經濟沈滯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고 있다.

1970년대 EC의 經濟統合이 부진했던 또 하나의 원인으로는 무엇보다도 EC회원국의 확대와 滿場一致방식에 따른 意思決定의 지연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1973년에 영국, 에이레 및 덴마크가 가입함에 따라서 EC統合은 새로운 過度期를 거치지 않을 수 없었고, 1965년 「룩셈부르크」妥協<sup>10)</sup>에서 도입된 全員一致制의 原則은 EC회원국이 확대됨에 따라 滿場一致方式에 의한 회원국간 의견조정을 크게 제한하여 왔다. 또한 석유파동 이후 나타난 世界經濟不荒과 보호주의 물결 가운데서 회원국들이 域外國家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상호간에도 각종 非關稅障壁을 높이 쌓았다는 점, 일단 구축된 역내 非關稅障壁이 회원국정부와 산업계의 타성과 偏狹한 시각 때문에 撤廢되지 못했다는 점 등이 EC統合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

주10) 1965년 7월 이사회에서 농산품의 과징금과 공업제품의 과세를 둘러싸고 가맹국과 대립했던 프랑스는 6개월에 걸쳐 회의를 거부하여 한 때 EEC는 해체위기에 처했는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룩셈부르크의 타협이라고 지칭되는 이사회에서 전원일치의 위치가 도입되어 의사결정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였음.



다.

이러한 반성을 배경으로 1982년 12월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C頂上會談에서 EC經濟統合의 필요성이 재확인됨으로써 經濟統合化의 작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힘입어 1985년 6월 EC위원회가 EC統合을 방해하고 있는 物理的, 技術的, 財政的 諸障礙要因을 제거하고 1992년말까지 진정한 EC單一市場을 형성하기 위한 구체안인 域內市場統合白書(Completing the international market, White Paper from the Commission)를 발표<sup>11)</sup>하여 同年 12월 「룩셈부르크」회의에서 승인을 받았다. 또한 域內市場統合白書에서 규정한 제반 障礙要因을 제거하고 1992년까지 經濟, 通貨統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相互協力 및 합의가 절대적이며 한편으로는 신속한 意思決定을 위한 制度整備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特定多數決 票決方式<sup>12)</sup>을 채택한 單一유럽의정서(The Single European Act)가 1987년2월 조인되어 동년 7월 발효됨으로써 EC의 經濟統合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

주11) Commission of the EC,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Completing on Internal Market", COM(87) 203, Final, 11 May, 1987.

12) 특정다수결제도는 이전의 전원일치제를 대신한 결정방식으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목표로 하였다. 총76표로서 각국의 비중에 따라 투표수를 배분하였으며 EC조약에 기초한 위원회의 제안에 대해서는 54표 이상, 그 밖의 경우에는 8개국 이상의 찬성을 포함한 54표 이상으로 결정된다.



## 2. EC統合의 主要 內容<sup>13)</sup>

### (1) 物理的 障壁(physical barrier)의 除去

物理的 障壁이라 함은 域內國境을 넘는 재화와 개인에 대해 통제의 형태로 존재하는 각종 障壁을 뜻한다.

域內國境을 통과하는 재화와 개인에 대한 회원국 세관과 경찰의 통제는 域內 주민의 눈에 EC가 진정한 의미의 共同體로 비치지 않게 하여 왔으며, 域內産業에 대해서는 큰 부담을 주고 있다. 통관에 수반하는 시간의 낭비와 手數料 負擔, 追加遂送費 부담 등으로 EC 산업의 경쟁력이 저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부담의 대부분이 역내 소비자에게 전가되어 EC 전체로 상품가격을 5-10%나 인상시키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執行委員會는 추정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間接稅 法規에 의한 障壁의 除去를 위해 회원국들 사이에 존재하는 附加價值稅와 物品稅의 부과대상 차이가 세율격차에 기인하는 財政的 障壁을 제거할 계획이며,

둘째, 貿易政策의 시행에 따르는 障壁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域外 財貨의 自由流通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 EEC創設 條約 제115조의 철폐를 추진할 계획이며,

셋째, 動植物關聯 保健規制에 기인하는 障壁에 대해서는 상호 信賴의 전제가 되는 공동검사기준을 마련하고 한 회원국이 실시한 검사를 여타 회원국이 信賴함으로써 이에 따른 國境統制를 완화할 계획이다.

네째, 遂送關聯 統制에 기인하는 障壁은 或內道路遂送 할당제를 통한 國境統制의 閉止를 통하여 제거할 계획이며

주13) 문병철, "EC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입법조사월보, 1989, 12, pp.107-109 ; 김태희, "유럽시장통합의 내용과 그 영향", 수은조사월보, 1989, 2, pp. 11-17 ; 김석중, "EC의 역내시장통합추진", 대우증권조사월보, 1988, 9, pp.23-27. 참조.



다섯째, 統計資料 수집에 기인하는 障壁에 대해서는 單一 通關書類(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의 사용을 통하여 國境統制를 완화하고 交易統計資料가 域內에서 획일적인 방법으로 수집되게하는 조치를 채택하며,

여섯째, 警察活動에 기인하는 障壁의 제거를 위하여 國境警察의 통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 (2) 技術的 障壁(technical barrier)의 除去

技術的 障壁이라 함은 회원국 각국이 독자적으로 經濟活動을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法規와 産業標準 등의 형태로 남아 있는 障壁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각 회원국이 독자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의 技術的 明細, 工業標準規格등이 이에 속한다. 이와 같은 技術的 障壁이 존재하기 때문에 역내 각 산업은 原價上昇, 規模의 經濟 利點喪失, 研究開發費의 過多支出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EC집행위의 지적이다.

技術的 障壁으로 인한 非效率을 제거하기 위해 EC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을 추진중에 있다.

### ① 財貨移動의 自由化

보건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기술이 급속도로 진보함에 따라 각 회원국 정부는 제품의 기술적 명세를 규제하는 법규를 제정, 시행하여 왔다. 또한 각 회원국의 여러 산업은 자체적으로 産業標準을 제정하였으며, 이를 지키도록 강요하였다. 그러나 보건과 안전을 위한 이러한 기술적 명세 및 産業標準은 1970년대 후반부터 國內市長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주 사용됨으로써 EC산업의 競爭力을 약화시킨 것이 사실이다.

EC는 재화의 자유이동을 막는 障壁을 제거하기 위하여 각 회원국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産業標準을 조화시켜 유럽산업표준 형태로 통일하는 한편, 새로운 障壁의 출현을 방지하는 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② 公共購買市場의 開放



EC 12개국의 정부기관이나 공기업들이 1년 동안 購買한 財貨와 用役의 총액은 1986년의 경우 5,300억 ECU로서 域內 총 GDP의 약 15%에 해당된다.

이 중 75%는 형식적 입찰절차에 의해 자국의 대기업에 제공되고 2%만이 다른 회원국 기업에 제공되고 있을 뿐이다. 1984년에 EC집행위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체결되어야 할 수의계약이 公開入札條件보다 훨씬 많았으며, 계약액이 일정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 入札公告가 EC관보에 의무적으로 게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EC가 추진중에 있는 公共購買에 관한 역내기업의 機會擴大措置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20만 ECU를 초과하는 공공물자 購買契約에 관한 입찰을 EC관보에 의무적으로 공고한다

둘째, 購買物資는 반드시 EC産業標準에 맞는 것으로 한다.

셋째, 현재 개방되지 않고 있는 動力 資源, 遂送, 電氣, 通信, 給水 분야도 개방토록한다.

### ③ 職業人 移動의 自由化

로마협정에 회원국의 근로자와 傳聞職業人이 域內 어느 곳에서나 거주하면서 經濟活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복잡한 行政節次를 두어 타 회원국 근로자의 체류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축사, 기사, 상업대리인, 약사등 전문직업인은 그 자격요건을 회원국마다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EC는 체류허가에 관한 행정절차를 폐지하고, 서로 다른 회원국에서 발급된 고등교육 이수증을 각 회원국들이 인정하게 하는 명령을 채택함으로써 직업인의 이동을 자유화할 방침이다.

### ④ 서비스 共同市場의 構築

金融 및 遂送 서비스, 신기술과 방송부분에서의 共同市場을 구축하기 위



하여 각 부문별 障壁의 제거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첫째, 域內 金融市場의 統合과 金融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障壁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銀行監督基準의 統一, 金融.保險등의 분야에서 회원국의 영업활동에 가하는 제한 撤廢, 기타 金融서비스 및 정보에 대한 共同通信網 설치와 貨金支拂方法의 공동화 등을 추진해 나간다.

둘째, 域內 GDP의 7% 수준을 차지하는 수송부문은 회원국들의 道路.航空.河川遂送에 관하여 체결한 각종 협정과 연안선박수송에 대한 규제 및 회원국들의 철도 독점때문에 공동시장을 갖지 못하였는데 EC위원회는 遂送市場의 統合을 추진하기 위하여 道路.鐵道.水路.海上遂送.航空 등 수송부문의 규제를 철폐하기 위한 포괄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셋째, 컴퓨터, 정보처리, 마이크로 프로세서등 신기술의 개발속도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각의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는데에는 비용의 重複과 增加, 規模의 經濟 缺如 등 많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EC위원회는 회원국 공동으로 研究開發을 수행하며 제품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한 新技術의 統一基準.規格을 설정하는 것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넷째, EC전역에의 自由放映을 보증하고 방송 프로그램제작과 송신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조치가 제안되었으며 동조치가 시행될 경우 방송에 관련된 기술적 내지 法律上的 障壁이 제거되고 EC전지역을 커버하는 시청지역이 설립될 것이다.

### ⑤ 資本移動의 自由化

金融機關의 域內活動에 수반하는 資本移動의 자유화가 강조되고 있는 가운데 EC 재무장관들은 지난 6월 룩셈부르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域內的 자본이동에 관한 모든 제한을 철폐키로 한 資本自由化 協定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

자본자유화 협정의 발효는 各國의 經濟水準에 맞춰 시차적으로 적용하기



로 하였기 때문에 영국,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덴마크는 '92년 7월1일부터 발효되며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아일랜드는 '92년 말까지 유보하고 그중 그리스와 포르투갈은 '95년까지 연기가 가능하도록 합의를 보았다.

資本移動의 自由化가 실시되면 EC域内の 모든 국민들은 어떤 會員國에서도 은행구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信用貸附 등 金融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資本移動 自由化措置로 資本流出이 심할 경우 각국은 최장 6개월내에서 잠정적으로 資本移動에 대한 제한을 할수 있으며 6개월이상 연장시는 EC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또한 자본유출로 인한 국제수지 불균형 발생시 각국의 中央銀行 지원을 위해 160억 ECU 규모의 기금을 설립하기로 하였으며 국가간 세율조정 및 脫稅防止를 위해 금년말까지 執行委員會가 이자소득과 세조정안을 마련하여 '89년 6월말까지 재무장관회의에서 이를 표결하기로 하였다.

資本移動의 자유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EMS의 활성화, 歐洲中央銀行(European Central Bank)의 創設과 역내 단일통화의 사용이 추진중에 있다.

EMS의 활성화 내지는 기능강화가 요청되는 이유는 EC統合의 일환으로 域內 資本移動이 자유화될 경우 單期的으로 換率變動爆이 확대되어 시장의 교란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편 歐洲中央銀行과 單一通貨의 創設은 域內市場統合에 관한 백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으나 역내 資本移動의 自由化에 따라 단기 투기적 자금의 유출입이 확대되면 회원국 통화간 환율이 교란을 받아 EMS제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歐洲中央銀行의 設立이 제창된 것이다. 그리고 EC 단일통화의 사용이 거론되는 이유는 회원국 통화간 환전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여 域內 資本分配의 효율성을 더욱 제고시킬수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나 歐洲中央銀行의 創設은 域內的 통일적 金融政策의 실시 가능성 여



부, 政治的 獨立性 保持, 中央銀行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주요국의 이해대립, 영국의 EMS가입 등 선결되어야 할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市場統合이 이루어진 후에까지도 계속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지적된다.

#### ⑥ 域內 産業協力要件의 構成

EC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域內에 잔존하고 있는 각종 障壁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적인 일이지만 域內企業들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EC집행위는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첫째, 域內企業들의 競爭促進을 위한 社會關聯 각종 법규의 제정

둘째, 知的所有權, 工業所有權 관련 共同體法規의 制定과 共同體 특허협정의 개정

셋째, 공동 연구, 개발사업 촉진을 위한 재정세제상의 지원방침 등

#### (3) 財政的 障壁(fiscal barrier)의 除去

EC회원국들의 간접세 구조와 간접세율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는데, 이러한 차이는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財政的 障壁이라 한다. 만약 재정적 장벽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國境統制가 撤廢되는 경우에는 높은 稅率을 適用하는 회원국의 구매자가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회원국으로부터 財貨를 購入하고 이를 과세자료의 기록에서 누락 시킴으로써 계획적인 사기와 탈세를 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그 결과 회원국 정부의 세수감소와 地域市場競爭의 왜곡이 초래되어 회원국 정부는 이를 도저히 방관할 수 만은 없게 될 것이다.

EC집행위는 이러한 이유로 財政的 障壁이 제거되지 않는 한 物理的 障壁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財政的 障壁을 제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는 역내의 附加價值稅制를 통일하는 일이다. 회원국의 附加價值稅制



(VAT)는 課稅對象에서도 차이가 있고, 適用稅率面에서도 <표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이가난다. 이를 위해 EC집행위는 단계적인 조치를 통해 域內전체 단위로 각 과세대상별로 標準稅率을 적용할 방침이다.

둘째는 물품세제의 통일이다. 물품세제 역시 附加價值稅制와 마찬가지로 課稅對象 및 適用稅率面에서 회원국간에 통일되어 있지 않다. 執行委員會는 物品稅制의 통일을 위해 附加價值稅制의 통일에 적용할 방식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여 단계적인 조치를 거쳐 標準稅率과 上.下限稅率을 결정해 나가고 과세대상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위원회의 추진안은 VAT의 적용세율을 2가지로 하고 각 회원국간 5-6%의 세율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즉 特別稅率(低稅率)은 주류를 제외한 모든 식품류, 의약품, 에너지 제품, 서적류, 신문잡지등에 적용되는 세율로 4-9%로 하며 표준세율은 14-20%로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안에 따른 VAT조정은 각국의 현행 VAT세제에 따라 세수의 감소 또는 제품의 가격상승 등의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신세제의 도입이나 기존 세제의 개혁은 정치적으로도 극히 미묘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영국의 경우에는 식품, 서적, 아동복에 대한 VAT적용세율은 0%이기 때문에 새로이 세율이 적용된다면 제품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아일랜드와 덴마크의 경우 VAT 표준세율이 각각 25%, 22%이기 때문에 적용세율이 인하될 경우 이들 정부의 세수가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表 3-3〉 各國別 VAT의 比較 (單位: %)

| 구 분    | 低稅率              | 標準稅率  | 高稅率    |
|--------|------------------|-------|--------|
| 벨기에    | 1.6              | 19    | 25, 33 |
| 영국     | -                | 15    | -      |
| 덴마크    | -                | 22    | -      |
| 프랑스    | 2.1, 4<br>5.5, 7 | 18.6  | 33.3   |
| 그리스    | 6                | 18    | 36     |
| 네덜란드   | 6                | 20    | -      |
| 아일랜드   | 2.4, 10          | 25    | -      |
| 이탈리아   | 2.9              | 18    | 38     |
| 룩셈부르크  | 3.6              | 12    | -      |
| 포르투갈   | 8                | 16    | 30     |
| 스페인    | 6                | 12    | 33     |
| 서독     | 7                | 14    | -      |
| EC執行委案 | 4-9              | 14-20 | -      |

資料: UBS-Phillips & Drew, Europe 1992: Breaking Down the Barriers, June 1988.



## 第 2 節 歐洲統合에 따른 韓·EC 通商關係에 미치는 영향

單一市場에 따른 EC의 對外通商政策은 相互主義를 기본으로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EC측은 韓國에 대한 상응한 開放을 積極적으로 요구할 것이다. EC측의 對韓國 市場開放 關心品目인 酒類, 化粧品, 醫藥品 등의 輸入市場 開放壓力이 강화될 것이며, 同壓力은 EC12개국 차원에서 공히 행사될 것인바 美國의 開放壓力에 따른 知的所有權 保護, 農産物, 담배 등의 市場開放, 保險市場開放 등 美國만을 대상으로한 國內市場開放은 EC측의 報復을 초래할 危險性이 있다.

또한 종래의 EC차원 및 각 會員國 차원의 輸入規制의 대부분이 日本, 韓國, 臺灣, 中國 등 아시아 일부 國家만을 대상으로한 차별적이었던 것임에 비추어 韓國에 대한 기존의 각 會員國 차원의 輸入規制가 EC수준으로의 확대가 우려되며, 輸入規制 또는 EC報復의 경우 該當國家市場만이 아닌 전체의 市場接近에 대한 規制가 되어 우리나라의 對歐洲進出에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다.

韓國 등 주요 新興工業國의 對EC 進出에 대한 保護主義的 對策 및 이에 대한 反作用 등을 고려, 美國과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는 원화 등의 對歐洲 貨幣에 대한 換率問題를 제기하고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新興工業國 貨幣의 대한 換率의 安定的 확보를 위한 裝置 마련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歐洲統合에 따른 韓·EC 통상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sup>14)</sup>

### 1. 肯定的인 側面

주14) KOTRA, “구주시장통합 및 우리의 대응”, 1988, pp.71-75.



歐洲統合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肯定的인 側面은 EC의 單一市場은 EC-EFTA間 單一交易圈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EC 市場概念이 더욱 廣域化 되어 우리나라 企業의 輸出伸張 및 EC-EFTA 進出擴大 效果를 가져올 것이다. 會員國間 상이한 工業標準規格의 統一로 현재의 少量多品種市場이 大量少品種市場으로 전환됨에 따라 輸出機會가 확대될 것이다. 單一市場完成으로 殘存輸入規制, 域內會員國間 自由流通禁止, 會員國間 쿼타制度 등 현재의 불합리한 輸入規制措置가 撤廢될 것이다.

또한 EC는 單一市場完成과 병행 尖端技術 共同開發에 주력해 나갈것인바 韓·EC間 合作投資 및 科學技術協力 分野로 확대될 것이다.

## 2. 否定的인 側面

한편 否定的인 側面을 살펴보면, EC는 會員國別 쿼타 등 輸入規制撤廢 대신 EC차원의 덤핑提訴 등 保護措置 강화 및 後進國, EFTA 國家를 통한 對EC 迂廻輸出을 封鎖할 것이고 規模의 經濟를 통한 유럽企業의 競爭力 강화로EC 域外市場에서 韓國 및 EC企業間 경쟁뿐만 아니라 第3國市場에서의 경쟁도 격화되어 韓·EC間 通商摩察增加가 예상된다.

EC는 對內 經濟政策 결과와 함께 共同通商政策을 종전보다 강력히 추구할 것인바, 특히 확대된 EC의 協商力を 바탕으로 雙務 및 多者間 通商協商에서 集團的 힘의 행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EC가 單一市場 追求過程에서 國際交易 環境變化가 그들에게 불리하게 전개되는 경우 閉鎖的 自給自足の 經濟體制의 고수와 域內 會員國間 交易增大에 치중하면서 競爭國에 대한 輸入規制裝置를 증대시켜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 3. 韓國의 對EC 輸出

單一市場 形成에 따른 EC 經濟活性化 및 成長으로 EC 市場 자체의 購買力이 증대되고, EC 市場規模가 확대된 單一國家市場化하며 標準 및 安全



規格이 통일됨에 따라 우리의 주요 輸出商品인 자동차 TV 電子製品의 大量輸出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市場規模에 비해 單一輸入規制措置로 韓國의 商品進出이 相對적으로 저조했던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에 대한 輸出物量増大가 가능할 것이다.

기존 40여종에 달하는 通關書類의 SAD(Single Administrative Document)에 의한 單一化, 行政的 費用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EFTA (歐洲自由貿易聯合)등 隣近國을 통한 迂廻輸出機會가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 4. 韓國의 對EC 輸入

生産性 향상 및 費用節減에 따른 競爭力 강화를 바탕으로 EC企業의 對外 競爭力이 강화되어, 自國의 比較優位産業을 중심으로 對韓輸出攻勢를 취해올 것이다. 그러나 EC 측 企業은 商品輸出에 있어서는 或內市場 또는 傳統的 商品市場인 ACP(Africa, Carribian, Pacific)地域 및 北美에 집중할 것임에 따라 당장 相互主義를 내세워 그들의 市場開放 關心品目인 酒類, 化粧品, 衣類品 등의 輸入市場 開放壓力을 가하고 知的所有權保護를 積極적으로 요청할 것이다.

또한 科學技術 開發 및 公共購買部門 開放에 따른 競爭力 강화로 EC 企業들이 우리나라의 대형 Project에 참여를 강화할 것이 예상된다.



## 第 4 章 韓 · EC通商現況과 問題點

### 第 1 節 韓 · EC交易 開況

그동안 歐洲共同體(EC)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逢着하기도 했지만 世界第一의 經濟權으로 成長,發展하여 현재 세계 총교역량에서 EC가 차지하는 비중은 35%이상으로서 美國에 대해서는 1.7배, 日本에 대해서는 무려 4배 이상이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EC에 대한 한국의 對外交易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美國 및 日本이 차지하는 構成比가 각각 20%를 상회한다는 점등을 고려한다면 아직 小規模에 지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와 EC와의 交易關係는 EC의 交易規模나 우리나라의 輸出潛在力에 비해 매우 미진한 상태에 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貿易構造가 政治的, 歷史的으로 관계가 깊고 地理的으로 인접해 있는 美國과 日本에 크게 偏重되어 발달되어 왔다는데 가장 큰 이유로 찾을 수 있겠지만 歐洲市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歐洲市場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市場特性이나 商慣習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가 부족하다는데 문제가 있다.

최근 수년간의 우리나라의 對EC 輸出入增加率は 全體增加率을 상회하고 있다. 1988년의 경우 對EC 輸出은 前年對比 23.2% 증가한 8,132百萬弗, 수입은 31.0% 늘어난 6,042百萬弗을 기록하였다.

한편 貿易收支는 80년대 들어 계속 黑字基調를 유지하고 있으며 1988년의 흑자액은 2,090百萬弗에 달하였다.

對EC 交易規模 및 黑字幅은 1986년 이후 더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1985년 9월 G5회담 이후 달러貨에 대한 EC主要國의 通貨切上으로 우리商品의 相對的 價格競爭力 強化와 輸出市場 多變化 努力이 상당한 成果를 거두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規模에 있어서는 美·日에 비해 상당히 뒤떨어져 있다.

1988년 對EC 輸出이 總輸出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13.4%, 輸入의 경우에는 11.7%에 지나지 않는다. 같은 해 美國과 日本은 總輸出의 35.3%와 19.8%, 總輸入의 24.6%와 30.7%를 각각 차지하였다.

輸出商品 구조면에서도 선박, 섬유류, 전자제품, 신발류등 극히 一部品目에 偏重되어 있어 이들 4개품목의 전체 대EC 수출의 80%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輸出商品의 偏重은 EC의 對韓GSP 공여역제 뿐만 아니라 수입 규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表 4-1〉 韓國의 對EC(10個國)輸出·入實積

(單位:US백만불, %)

| 區分<br>年度 | 1984            | 1985            | 1986            | 1987            | 1988            |
|----------|-----------------|-----------------|-----------------|-----------------|-----------------|
| 輸 出      | 3,217<br>(11.0) | 3,246<br>(10.7) | 4,305<br>(12.4) | 6,597<br>(14.0) | 8,132<br>(13.4) |
| 輸 入      | 2,713<br>(8.9)  | 3,058<br>(9.5)  | 3,215<br>(10.2) | 4,613<br>(11.2) | 6,042<br>(11.7) |
| 貿易收支     | 504             | 188             | 1,090           | 1,984           | 2,090           |

註) ( )안의 숫자는 韓國의 全體 輸出·入에서 차지하는 比重  
資料: 關稅廳 『貿易統計』 1989

한편, 兩地域間 貿易에 있어서 특징의 하나는 해당국의 經濟的 與件과 관계없이 연도별로 큰 旗幅을 나타냄으로서 거래의 안정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이다. 예로 급격히 수출이 증가하는 품목이 있는가 하면 好調를 維持하던 品目の 輸出이 急落하는 경우도 현저하며 회원국별로 살펴보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불규칙한 현상은 한국의 수출이 EC시장에서 확고한 기반을 갖지



못하는데 기인하고 있다. 몇가지 요인들을 살펴본다면 兩地域間 政治的인 配慮에 따르는 去來, 韓國側 業者의 거래선 변경 및 EC측의 敏感品目(Sensitive Items)에 대한 輸入規制 강화등을 들 수 있다.

한편 EC의 對韓投資 水準은 EC의 經濟規模 및 EC가 보유하고 있는 先進高度技術의 發展水準에 비추어 매우 저조한 水準이라고 할 수 있다. 1988년 현재 EC의 對韓投資는 건수면에서 197건 금액면에서는 604백만불로 日本과 美國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로서는 앞으로 우리 産業構造의 高度化 및 國際競爭力 向上에 기여할 수 있는 基礎素材, 醫學, 石油化學, 기타 尖端技術産業에 EC가 投資를 증대함으로써 先進高度技術의 이전이 촉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EC의 對韓投資와 마찬가지로 韓國의 對EC投資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1989년 5월 현재 對EC 直接投資는 총 68건, 약 51백만불로서 우리나라 海外 全體投資額의 3.7%에 불과한 실정이다. 業種別로는 貿易業 및 製造業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 이 가운데서도 製造業 投資는 EC輸入規制를 회피하기 위한 C-TV, 전자레인지, VCR 등 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投資形態의 대부분이 국내 생산부품을 현재에서 조립하는 것으로서 現地部品 調達比率을 크게 상향조정하려는 최근의 EC의 움직임으로 볼 때 새로운 戰略이 요구되고 있다.



〈表 4-2〉 EC 國家의 對韓國 投資現況(認可基準, 1988年末 現在)

| 국 명 | 건 수   | 투자금액(US백만불) |
|-----|-------|-------------|
| E C | 197   | 604         |
| 서독  | 76    | 179         |
| 영국  | 38    | 135         |
| 프랑스 | 31    | 102         |
| 화란  | 25    | 148         |
| 벨기에 | 12    | 10          |
| 일 본 | 1,777 | 3,092       |
| 미 국 | 620   | 1,612       |
| 전 체 | 2,821 | 5,976       |

資料: 財務部

〈表 4-3〉 우리나라 對EC 投資現況(1989.5月末 現在)

| 산 업   | 건 수 |
|-------|-----|
| 수 산 업 | 1   |
| 운수보관업 | 3   |
| 무역업   | 50  |
| 무역조업  | 11  |
| 제동산   | 2   |
| 부기타   | 1   |

資料: 韓國銀行 投資管理課



## 第 2 節 韓·EC 會員國別 輸出入現況

### 1. 輸出現況

韓國貿易에서의 輸出構造의 문제점중의 하나인 輸出對象國 偏在現像이 對 EC 輸出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表 4-4〉 對 EC 會員國別 輸出現況 (單位: 美백만달러, %)

|       | 輸 出   |      |       |      |      |
|-------|-------|------|-------|------|------|
|       | ' 87  |      | ' 88  |      |      |
|       | 金 額   | 構成比  | 金 額   | 構成比  | 增加率  |
| E C   | 6,596 | 100  | 8,132 | 100  | 23.3 |
| 西 獨   | 2,002 | 30.4 | 2,367 | 29.1 | 18.2 |
| 프 랑 스 | 879   | 13.3 | 1,069 | 13.1 | 21.6 |
| 英 國   | 1,525 | 23.1 | 1,950 | 24.0 | 27.9 |
| 이탈리아  | 551   | 8.3  | 732   | 9.0  | 32.8 |
| 네덜란드  | 769   | 11.7 | 824   | 10.1 | 7.2  |
| 벨 기 에 | 251   | 3.8  | 339   | 4.2  | 35.1 |
| 덴마크   | 145   | 2.2  | 252   | 3.1  | 73.8 |
| 아일랜드  | 25    | 0.4  | 37    | 0.5  | 48.0 |
| 그 리 스 | 96    | 1.5  | 103   | 1.3  | 7.3  |
| 스 페 인 | 292   | 4.4  | 395   | 4.9  | 35.3 |
| 포르투갈  | 55    | 0.8  | 56    | 0.7  | 1.8  |

資料: 商工部

위 〈表 4-4〉에서와 같이 한국의 대 EC 輸出比重은 1988년 西獨이 2,367백만불로 29.1%, 英國이 1,950백만불로 24.0%, 프랑스가 1,069백만불로 13.1%, 네덜란드가 824백만불로 10.1%로 이들 4개국의 비중이 전체수출중 76.3%로 전체의 약 3/4을 차지하고 있어 극심한 偏在現像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1987년 보다는 국별 편재도가 어느정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수출 대상국 偏在度가 낮아져 가고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1987년에 비하여 국가별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국가를 보면 덴마크(73.8%), 아일랜드(48.0%), 스페인(35.3%), 이탈리아(32.8%) 등인데, 특히 86년에 EC에 가입한 스페인에 대한 수출이急増하고 있다. 이는 스페인



이 EC가입 이후 漸進적으로 輸入規制를 완화시키고 있으며 域內輸出擴大를 위한 각종 부품의 수입이 증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2. 輸入現況

수입의 경우에도 수출과 마찬가지로 수입선이 편재되어 있다.

아래 <表 4-5>에서와 같이 1987년 한국의 對EC 수입의 國家別 比重은 西獨이 38.9%, 프랑스가 17.0%, 영국이 15.7%로 전체 우리나라 대 EC 수입의 71.6%를 점했던 것이 1988년에는 西獨이 34.3%, 프랑스 18.8%, 영국 15.1%를 기록하여 이 3국이 전체의 68.2%를 점하게 되어 이들 3국에의 輸入偏在度가 낮아져 가고 있으나, 아직도 이들 3국에 대한 偏在度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입증가율을 살펴보면, 1988년 EC전체가 31.0%로 상당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별로 1987년에 비하여 높은 輸入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나라로는 스페인(102.7%), 포르투갈(94.4), 네덜란드(92.1%), 그리스(72.7%)이다.



〈表 4-5〉 對EC 會員國別 輸入現況

(單位: 千 萬 美 元, %)

|       | 輸 入   |       |       |       |       |
|-------|-------|-------|-------|-------|-------|
|       | ' 87  |       | ' 88  |       |       |
|       | 金 額   | 構 成 比 | 金 額   | 構 成 比 | 增 加 率 |
| E C   | 4,613 | 100   | 6,042 | 100   | 31.0  |
| 西 獨   | 1,798 | 38.9  | 2,073 | 34.3  | 15.3  |
| 프 랑 스 | 783   | 17.0  | 1,134 | 18.8  | 44.8  |
| 英 國   | 722   | 15.7  | 915   | 15.1  | 26.7  |
| 이탈리아  | 536   | 11.6  | 638   | 10.6  | 19.0  |
| 네덜란드  | 266   | 5.8   | 511   | 8.5   | 92.1  |
| 벨 기 에 | 220   | 4.8   | 358   | 5.9   | 62.7  |
| 덴마크   | 120   | 2.6   | 139   | 2.3   | 15.8  |
| 아일랜드  | 54    | 1.2   | 65    | 1.1   | 20.4  |
| 그 리 스 | 11    | 0.2   | 19    | 0.3   | 72.7  |
| 스 페 인 | 74    | 1.6   | 150   | 2.5   | 102.7 |
| 포르투갈  | 18    | 0.4   | 35    | 0.6   | 94.4  |

資料 : 商工部



### 第 3 節 韓 · EC 主要 品目別 輸出入現況

#### 1. 輸出現況

韓國의 1988년 對EC 輸出品目別 構成은 <表 4-6>에서와 같이 주종품목이 섬유제품이 20.3억 달러로 25.0%, 전자제품이 12.8억달러로 15.8%, 일반기계 9.0억달러로 11.0%를 점하고 있다. 또한 품목별로 1987년에 비하여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품목을 보면 일반기계 73.1%, 선박 53.8%신발류 36.8% 등인데 1970년대에 주종품목이었던 섬유제품의 9.1%에 비하여 커다란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경공업제품은 점차 감소해 가고 있는 반면, 중화학공업제품은 점차 증가해 가고 있다.



〈表 4-6〉 對EC 主要品目別 輸出現況  
(單位:US 억달러, %)

| 輸出品目            | '87            | '88            |               |
|-----------------|----------------|----------------|---------------|
|                 | 金額             | 金額             | 前年比<br>增加率(%) |
| 全 體             | 66.0<br>(100)  | 81.3<br>(100)  | 23.2          |
| 경공업제품           | 31.5<br>(47.7) | 37.3<br>(45.9) | 18.4          |
| (섬유제품)          | 18.6<br>(28.1) | 20.3<br>(25.0) | 9.1           |
| (신발류)           | 3.8<br>(5.7)   | 5.2<br>(6.3)   | 36.8          |
| (완구 및 운<br>동구류) | 2.5<br>(3.7)   | 3.4<br>(4.2)   | 36.0          |
| (여행용품)          | 2.0<br>(3.0)   | 2.4<br>(3.0)   | 20.0          |
| 중화학공업제품         | 32.4<br>(49.2) | 42.0<br>(51.6) | 29.6          |
| (철강.금속<br>제품)   | 2.6<br>(3.9)   | 3.3<br>(4.1)   | 26.9          |
| (일반기계)          | 5.2<br>(7.9)   | 9.0<br>(11.0)  | 73.1          |
| (전기.전자)         | 10.8<br>(16.4) | 12.8<br>(15.8) | 18.5          |
| (선박)            | 1.3<br>(1.9)   | 2.0<br>(2.5)   | 53.8          |

資料: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號.

註: ( )內는 構成比

## 2. 輸入現況

〈表 4-7〉에서와 같이 韓國의 1988년 對EC 輸入商品別 構成은 主종품목이 一般機械 23.6%, 化學製品 14.6%, 電氣.電子 10.3% 등이다. 또한 높은 輸入 增加率을 보이고 있는 품목을 살펴보면, 消費財가 62.5%, 電氣.電子 31.9%, 化學製品이 29.4%를 나타내고 있다. 이와같이 韓國의 對EC 輸入品目은 機械類와 같은 資本財와 유기화합물 같은 化學製品 등 重化學工業製品이 주도하고 있다.



〈表 4-7〉 對 EC 主要品目別 輸入現況  
(單位:US 억달러, %)

| 輸入品目    | '87            | '88            |               |
|---------|----------------|----------------|---------------|
|         | 金 額            | 金 額            | 前年比<br>增加率(%) |
| 全 體     | 46.1<br>(100)  | 60.4<br>(100)  | 31.0          |
| 소 비 재   | 3.2<br>(7.0)   | 5.2<br>(8.6)   | 62.5          |
| 원 자 재   | 20.5<br>(44.5) | 27.8<br>(46.6) | 35.6          |
| (철 강 재) | 2.4<br>(5.2)   | 2.9<br>(4.8)   | 20.8          |
| (화학제품)  | 6.8<br>(14.8)  | 8.8<br>(14.6)  | 29.4          |
| 자 본 재   | 22.4<br>(48.6) | 27.4<br>(45.4) | 22.3          |
| (일반기계)  | 12.0<br>(26.0) | 14.2<br>(23.6) | 18.3          |
| (전기.전자) | 4.7<br>(10.2)  | 6.2<br>(10.3)  | 31.9          |

資料:關稅廳, 貿易統計年報 各號

주:( )내는 構成比



#### 第 4 節 對EC 通商增進上的 問題點

##### 1. EC의 對韓 輸入規制 및 반덤핑提訴現況

EC는 비록 或內貿易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나, 貿易規模面에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다. 더구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EC에 가입한 이후 EC의 市場潛在力은 더욱 커졌다. 한국 또한 經濟發展에 따라 市場規模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데, 지난 20년간에 걸친 持續的 經濟成長의 결과로 세계 10위의 교역권으로 부상하였다.

그결과 우리 나라의 市場規模 擴大는 韓國의 經濟協力 相對國에게 과감한 對韓市場進出 등 실질적인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같이 EC와 한국은 모두 매우 큰 市場潛在力과 經濟規模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韓·EC 經濟協力は 아직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하겠다. EC는 현재 한국의 제 3위 交易相對國이나 한국은 EC의 25위 교역상대국에 불과한 실정이다. 1988년 현재 한국의 對EC 市場占有率は 0.47%인 반면, 대만과 홍콩은 각각 0.52%, 0.55%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소규모의 교역량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對 EC수출의 상당부분은 실제로 EC 및 EC국들의 輸入規制下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EC 輸入規制下의 輸出比率이 1988년중 총 34%에 달하였다. 韓國의 對美·對日 輸出의 同比率이 각각 19%, 20%임에 비추어 볼 때, EC의 輸入規制率は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다.<sup>15)</sup>

한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EC가 적응하고 있는 各種 輸入規制策으로는 쌍무 및 일방적 쿼타, 輸出自律規制등이 있다. 規制方式에 있어서 EC국들은 數量規制의 合法的 根據로 정부간 협정을 주로 사용한다. 1988년중, EC의 수량규제하에서 이루어진 한국의 총수출의 80%가 정부간 협정에 의한 것이었다. 두번째로 빈번하게 사용되는 규제책으로는 輸出自律規制가 있는

주15) 유 영, “강화되는 한·유럽 경제협력”, 세계경제동향, pp.25-27.



데 동 규제의 비율은 18%였다.

EC의 對韓輸入規制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對EC輸出額에 대한 規制比重이 85년의 29.5%, 86년 35.7%, 87년 41.0%, 88년 33.7%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表 4-8〉참조.)

〈表 4-8〉 韓國의 對EC 主要國 輸入規制下 輸出

(單位:US백만불,%)

| 구 분                    | 1986  |       |      | 1987  |       |      | 1988  |       |      |
|------------------------|-------|-------|------|-------|-------|------|-------|-------|------|
|                        | 總輸出   | 規制下輸出 | 比重   | 總輸出   | 規制下輸出 | 比重   | 總輸出   | 規制下輸出 | 比重   |
| EC 全體                  | 4,305 | 1,538 | 35.7 | 6,596 | 2,702 | 41.0 | 8,131 | 1,987 | 33.7 |
| 西 獨                    | 1,242 | 448   | 36.1 | 2,002 | 849   | 42.4 | 2,367 | 28    | 1.2  |
| 英 國                    | 1,034 | 329   | 31.8 | 1,525 | 688   | 45.1 | 1,950 | 14    | 0.7  |
| 프 랑 스                  | 543   | 205   | 33.7 | 879   | 434   | 49.5 | 1,069 | 208   | 19.5 |
| 이 테 리                  | 319   | 150   | 46.9 | 551   | 333   | 60.5 | 733   | 94    | 12.9 |
| 네덜란드<br>벨 지 음<br>룩셈부르크 | 760   | 238   | 31.3 | 1,022 | 448   | 43.9 | 1,165 | 19    | 1.6  |

資料:商工部『輸出統計』1988.

한편 EC의 반 덤핑제소에 의한 輸入規制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85년 이후 EC의 대한 반덤핑제소 推移는 〈表 4-9〉과 같다.<sup>16)</sup>

〈表 4-9〉 對韓 반덤핑제소 推移

| 年 度 | 1985 | 1986 | 1987 | 1988 |
|-----|------|------|------|------|
| 件 數 | 1    | 2    | 6    | 4    |

資料:韓國貿易協會

주16) 제일은행, “대EC교역조건의 변화와 발전적 대응방안”, 월간경제동향, 1988, 6, pp.23.



최근 EC의 韓國商品에 대한 반덤핑 제소 및 調査品目を 살펴보면

- ① 덤핑조사중인 품목 : MWO(전자렌지), 옥살산, 폴리에스터사, 자전거용 타이어 및 튜브.
- ② 調査開始 檢討中인 品目 : VCR
- ③ 덤핑제소가 우려되는 품목 : 칼라브라운관, CVT, 앨범 등이다.

<表 4-10> 輸入規制調査對象 品目

| 品 目        | 調 査 開 始        | 規 制 形 態                 |
|------------|----------------|-------------------------|
| 전 자 레 인 지  | 86.12.18       | 반덤핑                     |
| C P D      | 87.07.06       | //                      |
| Polyester사 | 87.07.01       | //                      |
| 수 산        | 87.05.22       | //                      |
| V C R      | 87.09.25       | //                      |
| 비디오테이프     | 87.10.14       | //                      |
| 폴리에스터필름    | 87.10.14       | //                      |
| 칼 라 T V    | 88.02.17       | //                      |
| 신 발 류      | 87.08.15(이탈리아) | Safeguard<br>(자율규제로 대체) |
|            | 87.10.13(프랑스)  | Safeguard               |

EC의 對韓 輸入規制 및 반덤핑제소 現況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EC 공동차원에서 섬유류와 철강, 양송이통조림이 輸入規制를 당하고 있어 對EC 수출이 거의 중단상태에 있다. 또한 선박, 섬유류, 전자제품, 신발류, 금속제양회기등 對EC 主要輸出商品은 현재 輸入規制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품목들이다. 선박은 日本과 함께 우리나라가 EC의 경제대상이 되고 있으며, 섬유류는 쿼타규제 및 상호주의 압력을 받고 있다. 라디오, TV, VTR등 전자제품도 對EC 輸出増大에 건인차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각종 輸入規制와 경계를 받고 있는데 특히 VTR의 경우 EC는 86년부터 輸入關稅率을 8%에서 14%로 인상한 외에도 한국산 VTR을 감시품목으로 지정, 輸入物量을 체크하는 등 輸入規制 움직임을 늦추지 않고 있다.

신발류 또한 對韓輸入 物量이 감시되고 있으며 금속제양식기도 최근의 EC



덤핑조사에 외에도 EC 각 회원국들로부터 自律規制를 당하고 있다. 이러한 輸出商品의 偏重은 대한 GSP 수혜억제의 원인이 되고 있기도한데, EC는 86년부터 제 2기 하반기 GSP공여기간을 맞이하여 先發開途國에 대한 供與抑制 後發開途國에 대한 GSP공여를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86년의 경우 EC는 한국상 신발류, 스포웨어 인너튜브 등 10개품목에 대해 공여한도를 50% 축소한 것 외에도 컬러TV, PE백, 안경테, 브라운관, 낚시도구, VTR등에 수혜를 제한했다. 따라서 對EC GSP수혜 확대를 위해서는 GSP 공여제한이 없는 非關心品目을 중심으로한 輸出商品多樣化가 요청되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것은 그동안 EC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GSP제도를 다소 불명확하게 운영해 왔으나 최근들어서는 GSP운영을 보다 엄격히 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 2. EC의 對韓市場開放 壓力現況

EC의 保護貿易主義 조치는 낮은 교역수준 및 전반적인 貿易收支와 관련하여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3년 이후 EC와의 교역에서 貿易收支 黒字를 계속하여 왔다. 85년에는 80년의 10억3,600만달러 흑자에서 1억6,900만달러로 흑자폭이 대폭 격감되었으나, 87년에는 흑자폭이 20억 달러로 다시 대폭확대 되었으며, 85년에 비하여 높은 비율로 교역량의 증가를 기록하였다.

이와같이 EC측의 對韓貿易收支의 不均衡이 지속됨에 따라 EC국가들은 한국에 대하여 輸入自由化의 擴大, 既自由化된 品目에 대한 기타의 輸入規制 撤廢, 그리고 자동차와 주류 등 주요 관심품목의 關稅引下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金融市場開放을 비롯한 서서비스산업분야에 대한 開放擴大도 요구해 오고 있다.

특히 EC측은 知的所有權保護問題와 關聯, 저작권과 소프트웨어의 보호,



미시판물질특허 보호, 제법특허의 물질특허로의 보정에 의한 소급보호 등 미국과 동등한 수준의 대우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EC는 이와같은 제반 通商提案의 해결을 위한 壓力手段의 하나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GSP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미 금년 1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GSP공여를 중지한 바 있다.

### 3. 問題點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EC는 한국에 대하여 輸入規制 및 반덤핑제소를 하면서 다른한편으로는 市場開放壓力을 가해오고 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對EC 通商增進上의 問題點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 총교역의 1/3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EC시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EC라는 Block경제권이 갖는 특수한 시장성격에 대한 정확한 인식부족을 들 수 있다.

셋째, EC와의 통상문제 해결을 위한 채널이 미비하고 각종 규제에 대비한 업계의 자율규제 노력도 부족하였다.

넷째, 우리의 市場開放과 知的所有權保護問題에 있어 EC측은 미국과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EC의 對韓 GSP수혜정지조치에 대한 사전대비가 미흡하였다.

다섯째, 우리의 貿易相對國이 美·日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어 EC시장 진출에 소극적이었고 競爭相對國인 日本·臺灣 등에 비해 對EC 수출이 저조한 실정에 머물렀던 점이다.

EC의 對韓國輸入市場 占有率이 9% 이상에 비하여 한국의 EC역내 輸入市場 占有率은 臺灣의 1.0%, 홍콩의 1.4%, 日本의 3.2%에 비해 1% 이하라는 점에서 낮은 수준에 있다.

비중면에서 한국의 對EC 수출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입은 증가추



세에 있다. 이는 EC시장에 대한 관심부족과 市場開拓努力의 결여에 있다.

세째, 輸出入構造가 일부품목에 편중되어 있는 점이다. 한국의 對EC 수출은 섬유류, 선박, 전자제품등이 70% 이상을 점하고 있으며, 수입은 기계류, 선박, 유기화합물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더우기 수출주종품목은 대부분 수입규제를 받고 있다.



## 第 5 章 EC의 通商政策 과 韓國의 對應

### 第 1 節 EC의 通商政策

#### 1. EC의 通商政策基調

EC는 對外通商 關係에 있어서 EEC 設立 根據法인 로마條約 第11條,<sup>17)</sup> 113條<sup>18)</sup>에 의거하여 1969년말까지 共同通商政策을 수립하고 이러한 政策을 통해 각 회원국 통상제도의 점진적 통일을 도모하고 있다.

##### ① 關稅政策

EC는 1968년 7월 1일자로 關稅同盟을 완성하여 EC회원국에는 관세의 적용이 되고 있지 않으며, 商品과 用役 등의 자유로운 유통이 보장되고 있다. 곧 EC는 하나의 완전한 시장이 된 것이다. 따라서 EC 關稅制度는 역내의 관세부와 대신에 다만 域外의 동맹외국가에 대해 EC가 제정한 관세율에 따라 공동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또한 EC에는 共同關稅率외에 特惠關稅政策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에선 첫째, 쌍무적인 협정에 의해 EC 共通關稅率의 일부를 면제, 혹은 경감하는 特別協定關稅와 둘째, EC가 일방적인 조치로서 減免惠澤을 공여하는 코터관세와 GSP라고 불리우는 一般特惠關稅가 있다.

##### ② 保護政策

EC의 保護政策은 본질적으로 關稅 및 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즉, GATT정신에 기초를 두고 이념적으로 自由貿易을 표방하고 있으나, 73년 Oil Shock이후 세계적인 保護貿易主義 확대에 따라 무역상의 규제를 함으로써 제보호

주17) 과도기간까지 통상정책통일안마련, 대외관세협정조정, 일국의 수입규제조치변동시 집행위원회에 사전통보의무와 이에 따른 여타 회원국의 동일조치시행의무를 규정함.

18) 과도기간후 통상분야에서 EC의 권한사항으로 관세율 수정, 관세협정 및 통상협정 체결, 자유화조치의 통일, 수출정책, 반덤핑관세와 상계관세 등의 무역상 방어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EC 보호장치의 근간은 세이프 가드(Safe Guard)와 덤핑 규제장치로 크게 분류되는데, 세이프 가드에 해당하는 보호장치 수단으로 監視制와 數量制限의 두가지가 있으며, 監視制의 경우 주로 섬유류와 신발류 등 개도국의 主輸出品目으로서, 이 경우 수출국을 지정하여 감시제가 실시된다. 세이프 가드에 의한 모든 보호장치는 잠정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일단 시행될 경우에는 연장하여 적용되는 것이 관례처럼 되어 있다.

다음 덤핑규제는 제 3국의 投賣行爲 또는 政府補助에 의한 수출행위에 대응하는 보호수단으로서 상품내용에 따라 3개의 개별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에 관한 규정은 1966년 농산물, 68년 공산품, 77년 4월 철강재에 관한 규정등이 있으나 덤핑규제의 대상은 역시 공산품의 규제가 주된 목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와 같은 EC의 교역상의 제반 保護政策의 실시는 國際貿易秩序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貿易依存度가 높은 EC제국에게는 결코 유리한 방향이 되지 않는다.

### ③ 通商協定

通商協定은 關稅政策, 保護政策과 함께 EC共同通商政策에 주요한 일부를 구성하며, EC와 특별관계에 있는 국가와 一般貿易協定, 特惠貿易協定, 自由貿易協定등 다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EC와 개도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도국에 대한 經濟協力을 위해 1971년부터 一般特惠關稅制度(GSP)를 실시하여 개도국과 EC 이익지역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일방적으로 관세를 면세 내지 감세하여 주고 있다.<sup>19)</sup>

주19) 제 4차 특혜특별위원회에서 GSP의 적용대상을 논의한 바 “자기선택의 원칙(Self-election principle)”에 입각 77 Group에 속하는 개도국을 특혜수혜국으로 하고 해외속령이나 기타지역에 관하여는 당사국간에 자유재량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EC는 共同通商政策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 EC의 對外 共同通商政策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지는 못하고 있으며 수입규제 수단도 회원국 간의 이해가 상충하여 부분적으로만 통일되어 있는데 불과한 실정이다. 이 중 對外共同關稅만이 비교적 광범위하게 통일되어 있는 부분이다. EC의 對外共同關稅에 관한 기본방침은 다음과 같다.<sup>20)</sup>

첫째, GATT 加盟國에 대해서는 協定關稅 적용

둘째, 공산권국가에 대해서는 自律關稅 (autonomous tariff) 적용

셋째, EFTA회원국에 대해서는 自由貿易協定 (1972년 7월 체결)에 의해 공산품 관세 철폐

넷째, 개도국에 대해서는 GSP 特惠關稅 적용

다섯째, ACP 제국과는 로메협정 (Lome Convention)에 의거 無關稅 적용

한편 EC는 자유무역 추구를 對外通商政策의 기조로 하여 세계교역의 점진적 자유화가 EC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인식하에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984년 9월 不公正 貿易慣行規則의 제정을 계기로 EC의 對外通商政策 基本方向이 自由貿易原則에서 公正貿易原則으로 선회했다고 할 수 있는바, 동규칙은 對EC 原資材輸出 제한이나 域外國의 정부구매시 EC기업에 대한 차별대우 등의 不公正貿易에 대해서 법적인 대처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다.

---

주20) 손상익. 이경숙, 전거서, p.114.



## 2. 最近의 EC通商政策

EC는 최근들어 保護政策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그 배경에는 첫째, 産業構造調整 지연 및 구조적 실업 증가문제를 수입규제라는 단기적 처방에 의존하여 해결하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점, 둘째, 산업간의 구조적 마찰로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사향산업보호를 내세워 노조와 관련 단체가 정치적인 압력을 가중하고 있는 점, 셋째, 일본을 비롯, 아시아 NICs 등 대EC 貿易黒字國에 대한 市場開放壓力 수단으로서 輸入規制를 사용하려는 점이다.

이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서 EC는 대외적으로는 域內市場統合이 세계의 자유무역 증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으나,<sup>21)</sup> 市場統合의 이익을 제3국이 잠식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명분하에 相互主義 적용과 原產地規定을 강화하고 있어서 「유럽요새화」(Fortress Europe)를 구축하는 것은 아닌가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sup>22)</sup>

주21) 1988년 10월 19일 EC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역내시장통합추진방향에 대한 기본입장을 발표.

- ① 역내시장통합은 역내외 모든 기업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며 다자간 자유무역주의를 존중
- ② EC는 역내시장통합 후에도 국제적인 의무를 계속 준수. 즉, 기존의 다자간 혹은 쌍무협정을 존중하며 우루과이라운드 같은 다자간 체제 보호에 적극 나설 것임.
- ③ 역내시장통합은 최종적으로는 현재의 보호주의조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진
- ④ 그러나, 제 3국에 대한 역내시장 개방은 GATT정신에 입각한 호혜적 이익의 균형이라는 상호주의에 의거, 상대국시장의 개방정도에 따라 결정.

22) 손상익. 이경숙, 전계서, pp. 115-116.



〈表 5-1〉 EC의 通商政策變化比較

|            | 로마조약(1957)의 통상정책                                                                                  | 최근의 통상정책                                                                         |
|------------|---------------------------------------------------------------------------------------------------|----------------------------------------------------------------------------------|
| 제품분야<br>관세 | · 관세동맹 결성<br>· 반덤핑관세, 긴급수입제한<br>조치 등 GATT에서 인정하는<br>수입제한조치 시행<br>· 자율규제조치<br>· 수입수량제한등을각국별로<br>시행 | · 유지<br>· 유지. 강화<br><br>· 유지. 강화<br>· EC차원의규제<br>조치로 전환<br>· 대역외국 비관<br>세 장벽강화   |
| 비관세        |                                                                                                   |                                                                                  |
| 서비스 분야     |                                                                                                   | · 상호주의 도입                                                                        |
| 지역별 경험     | · EFTA와 자유무역협정체결                                                                                  | · EFTA와 비관세,<br>자본, 노동분야<br>에서 협력강화<br>→유럽경제권 형<br>성추진<br>· 소련. 동구제국과<br>경제협력 강화 |
| 직접투자       | · 원산지기준 제정                                                                                        | · 원산지기준 강화                                                                       |

#### (1) 반덤핑규정 강화

EC는 지난 1968년 4월 5일에 채택된 “EEC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덤핑 및 補助金 또는 支援金제공 행위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규칙”인 No.459/68에 의거하여 EC차원의 반덤핑을 시행중인데, 현재까지 일부조항의 수정을 포함하여 총 6차에 걸친 개정<sup>23)</sup>을 통해 輸入規制를 강화해오고 있다.

EC의 덤핑제소 건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거의 없었던 상태로, 1968년부터 1976년까지 전체 제소건수는 38건에 그쳤다. 그러나 1977년부터 EC의

주23) ① 1973년 459/68 일부 수정, EC가입국은 EC차원의 반덤핑조치 적용.  
 ② 1979년 7월 459/68 대폭 수정, 국영무역 국가산 수입물품의 정상  
 가격산출 관련규정 마련  
 ③ 1979년말 3017/79제정, 반덤핑판정요건을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주  
 요한 원인증명에서 단순히 피해의 원인 입증으로 완화.  
 ④ 1984년 7월 2176/84 제정, 농산물을 포함하는 물품전반 및 서비스  
 에 대해서도 덤핑을 적용하며 자동소멸조항 (sunset 조항) 도입. 5  
 ,6차는 위의 내용에 있음.



덤핑제소 건수는 갑자기 늘어나 1987년까지 446건으로 연평균 약 45건을 기록하였다. 이렇게 EC의 덤핑제소가 늘어난 이유는 1970년대부터 深化된 회원국들의 經濟不況에 執行委員會가 반덤핑 심사제도를 강화했기 때문이기도 하며, 제 3국들의 과도한 輸出競爭도 그 원인이 된다. 특히 GATT협정에 의해 긴급수입제한 조치가 사실상 적용하기 어려움에 따라 개별국가를 선택해서 적용할 수 있고, 수출국에 대한 배상의 책임이 없다는 점 때문에 반덤핑 제도가 유리했기 때문이다.<sup>24)</sup>

최근의 개정안으로서는 1987년 6월에 이사회에서 확정된 Regulation No.176/87은 EC 현지 進出業體의 生産品일지라도 EC산 부품을 附加價值基準으로 50%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域外國産으로 간주하여 반덤핑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서 일명 Screwdriver 규정이라고도 한다.<sup>25)</sup> Regulation NO. 2423/88의 핵심내용은 반덤핑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外國輸入品의 域內價格이 關稅上當分 만큼 인상되지 않으면 追加關稅를 부과하도록 하고 또 遡及關稅條項을 신설한 것이다. 이중 추가관세 적용으로 생산코스트 절감이나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상품가격 인하가 인정되지 않게 되어 역외기업의 경쟁조건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26)</sup>

## (2) 原產地規定 強化

原產地規制는 EC或內市場이 완전히 자유화된 상태라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EC회원국들간에는 많은 貿易障壁이 존재하고, 특히 각 회원국들은 서로 다른 국별쿼터를 가지고 있으며, GSP, MFA나 철강의 경우 할당쿼터를 가지고 있으므로 原產地規制가 필요하다. 또한 EC는 EF

주24) 민충기, "EC 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응방향" 「EC통합과 정책대응」 세미나 자료, 대외정책연구원, 1990, 1, p.129.

25) EC, Council Regulation No.3017/79.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 L339, 31, Dec., 1978. Council Regulation No. 1580/82.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L178, 22, jun., 1982

26) 손상익·이경숙, 前掲書, pp.118-119.



TA나 ACP와 같이 무역상의 특혜를 주는 나라들이 있으므로, 수입이 제한된 품목들이 이들을 통해서 間接輸入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原產地規制가 더욱 필요하다. 특히 최근들어 EC는 외국인 直接投資에 의한 域內生産品에 대해 국산화율을 요구하면서 原產地規制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sup>27)</sup>

그러나 국제적으로 통일된 原產地規定이 없기 때문에<sup>28)</sup> EC는 독자적으로 규정을 들어서 數量規制나 반덤핑관세가 부과된 제품 또는 EC와 自由貿易協定을 체결한 국가를 통한 수출 및 외국인의 투자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 여타 EC회원국으로 우회수출되는 것을 규제하고 있다.

1989년 2월 EC위원회는 域外産 공업제품의 原產地 證明規定 강화안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중에 현지부품 사용율(Local Content)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서 향후 입법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지부품 사용 의무 강화로 수입규제 회피를 위한 域內 단순조립 공장설립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 (3) 相互主義 (Reciprocity)<sup>29)</sup> 適用

EC는 현재 相互主義와 관련된 명령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으나 서비스, (政府購買, 金融 등), 투자 기타 필요분야에서 域外國에 대한 EC市場開放條件으로 상대국도 EC에 상응하는 수준만큼 개방해야하는 相互主義原則의 적

주27) 민충기, 전제서, pp.136-137.

28) UNCTAD에서 제정항 원산지규정의 목적은 GSP에 의한 특혜관세 우대를 수혜개도국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상품에 국한시키고 제3국의 제품을 이러한 특혜관세 대우로부터 근본적으로 제외시키자는데 있는 것인 바, EC의 원산지규정과는 다른 개념임.

29) GATT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서 GATT체약국은 무역면에서 상호 대등한 입장에 공평하고 평등한 시장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의이다. 단, 개도국에는 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 (37조). 최근 선진권에서 상호주의 개념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이는 선진국이 상호주의 예외의 혜택을 누려온 개도국에 대하여 경제발전에 상응한 국제무역상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GSP혜택도 축소 내지 졸업시켜야 한다는 논리에 기인한다. EC의 상호주의 개념은 아직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는데 GATT의 개념과는 다르며 보호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크다 하겠다.



용을 對外通商政策의 기본으로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註 1 참조). EC가 의도하고 있는 相互主義 適用目的은 相對國에 대해 기회의 균등 뿐 아니라 결과의 균등까지 확보하는데 있다. 相互主義 測定基準으로 고려하고 있는 사항은 내국민 대우 여부, 特定分野에서 EC가 공여하고 있는 수준과 동일한 대우의 施行與否, 全般的인 市場開放 정도 및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양허 정도를 기본으로 한 相互主義의 전반적인 균형이다.

앞으로 相互主義 적용이 어떠한 형태를 띠는지 아직 알 수 없으나 對EC 貿易黑字國들을 우선 대상으로 할 것임은 자명하며 따라서 계속 對EC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相互主義 原則을 市場開放壓力 手段과 輸入規制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다분히 많다.

#### (4) EC次元의 輸入規制 存續 可能

EC는 會員國의 국내사정을 감안하여 域外國에 대한 국별 輸入規制措置를 허용하고 있는데 현재 數量規制品目은 735개에 달하고 있다. (대부분 스페인, 포르투갈에서 시행중이며 과도기간 만료시 대폭 축소 예상임)

그러나 EC시장이 統合되면 상품이동이 자유로와져서 국별 數量規制는 의미가 없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국가에서는 數量規制措置의 존속을 요구하고 있으며 委員會에서도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對域外關係基本方針中에서 會員國別 殘存數量制限措置 철폐대상에서 일부 敏感品目を 제외시켜 주로 輸出自律規制形態로 하여 EC전체차원규제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혔다. 對象品目は 자동차, 석유류, 신발, 전자제품, 사료, 재봉기, 모터사이클로 주로 일본과 NICs의 對EC 주종수출 상품으로서 만약 이 조치가 시행된다면 우리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sup>30)</sup>

주30) 손상익, 이경숙, 전계서, p.122.



## 第 2 節 韓國의 對應

### 1. EC 地域의 重要性 認識

EC에 대한 인식을 ‘第1輸出市場’으로 轉換할 필요가 있다. EC는 현재 GDP 및 1인당 GDP면에서는 미국에게 뒤지나 人口, 交易規模, 産業生産面에서 미국을 앞서고 있으며 1992년 EC통합이 완료되는 1993년 부터는 GDP규모로 미국을 능가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EC는 經濟統合을 계기로 주변국가와 經濟協力擴大를 도모하고 있어 앞으로 우리의 對EC 시장확대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up>31)</sup>

우리나라와 EC와의 經協關係는 지리적 원격성으로 美·日에 비해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으나 産業發展段階側面에서 相互補完的으로 貿易, 技術開發, 資本協力分野의 經濟協력을 증대시킬 여지가 많다.

‘87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對EC 제조업 부문의 直接投資額은 전자부품의 4건에 600만달러로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 또한 EC제국의 對韓 投資도 미국과 일본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原資材나 商品輸出 등 전반적인 輸出誘發效果가 큰 해외 제조업 부문의 투자가 적극화 되어야 하며,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으로 EC기업의 投資幼稚·合作生産을 통하여 첨단 기술의 습득은 물론 역수출의 기회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sup>32)</sup>

따라서 우리의 對EC 인식을 美國·日本 다음의 EC가 아니라 EC·美國·日本으로 전환하여 EC統合市場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輸出戰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2. 對EC 交易의 均衡化 推進

韓·EC間 通商摩擦緩和와 經濟協力關係의 改善을 위해서는 輸出擴大에 중

주31) 손상익·이경숙, 전거서, p.152.

32) 문병철, EC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입법조사월보, 1989, 12, p.124.



점을 둔 공격적인 성장전략보다는 開放과 協助에 의한 相互繁榮의 發展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단계적인 自由貿易體制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 나라는 80년대동안 輸入開放을 急速度로 推進해 온 結果 輸入自由比率는 1988년 현재 94.7%에 달하고 있고 1991년에는 97.3%에 달할 예정이며, 輸入規制品目은 農産物 몇몇 品目に 한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입개방과 對EC 輸入先轉換施策의 적극적 추진에도 불구하고 제2의 일본이라는 對韓 인식은 크게 변함이 없으며 對韓 輸入規制와 通商壓力은 완화될 전망을 보이지 않고 있다.<sup>33)</sup>

우리나라가 EC와의 교역에서 흑자를 보이는 반면 우리 나라는 일본과의 교역에서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바 대일 수입선의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輸入市場으로서 EC시장에 대한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美國市場으로의 수입선 다변화는 현재의 通商摩擦 문제를 감안할때 시급한 문제임에 틀림없으나 EC로의 輸入先轉換 역시 通商摩擦의 예방적 차원에서 뿐 아니라 EC통합과 함께 EC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될 것임을 감안할 때 기업으로서 原價節減도 이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sup>34)</sup>

EC는 한국이 差別的 通商政策을 실시하고 있고 한국의 소나기식 수출이 EC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으나, 한·EC간 通商摩擦은 根本的으로는 상호이해와 협력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한·EC간 관계개선을 위해서는 상호이해나 협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協力機構나 協力體制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개방과 협력의 相互依存度를 深化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3. 輸出競爭力 提高

주33) 손상익·이경숙, 전제서, p.153.

34) 김승철, EC통합추진과 우리의 대응전략(서울: 한국외국어대 무역대학원, 1988, 6, PP.91-92).



EC統合으로 EC域內企業은 費用節減, 規模의 經濟效果를 얻음으로서 무엇보다도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동종상품인 경우 한국상품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EC統合은 특히 域內生産要素移動의 自由化와 非關稅障壁의 緩和에서 오는 資源配分の 效率性 増大 및 規模의 經濟實現으로 가격면에서 域內 生産製品의 競爭力이 제고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우리나라도 技術開發의 擴充과 生産性提高, 大企業과 中小企業間의 生産分化 및 系列化, 企業別 生産特化 등을 통하여 價格競爭力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기업의 賃金引上和 換率變更의 추세, EC반덤핑정책을 통한 輸入規制強化 등을 감안해 보면 가격면에서의 경쟁력 제고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sup>35)</sup> 특히 EC시장은 동일상품을 대량 소비하는 미국시장과는 달리 다수 국가로 구성되어 域內國間에도 서로 문화적인 차이가 있어 수요구조도 다양하기 때문에 특정 상품의 大量輸出보다는 여러가지 종류의 상품을 小規模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輸出政策을 전환하는 한편, 소비자의 기호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신제품개발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밖에 고유상표 개발도 적극 추진하는 한편 EC시장 전역에 걸친, 활발한 광고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장확보를 기할 뿐 아니라 EC의 對外通商政策 수립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域內 經營者團體, 勞動組合, 地方自治團體 등과 꾸준한 접촉을 통하여 EC의 對外通商政策이 우리 나라에 불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직적인 로비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sup>36)</sup>

또한 우리 나라 상품은 포장, 홍보면에서 취약하다는 現地輸入商의 지적에 대해 포장의 개선이 요구되며 유럽박람회 참가 등을 통한 홍보기능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주35) 손상익. 이경숙, 전계서, P.155.

36) 오재권. 조승형, "EC통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한국은행, 1989, 4, p.41.



#### 4. 企業의 現地化戰略 擴大

92년도 계획에 따른 EC의 對外貿易政策의 변화는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예상되므로 海外直接投資를 통한 산업의 유럽화 정책이 절실히 요망된다.

1992년 EC市場統合이 이루어진 후에도 域外者로 남아있어서는 EC진출에 더욱 애로사항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인 바, EC市場統合의 이익을 EC域內企業과 함께 나누면서 장기적으로 市場擴大를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일찍 EC 내에 현지생산 체제를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EC의 保護貿易主義가 강화된다하더라도 현지화전략에 의한 외국인기업들은 역내시장 확대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과 日本은 EC의 92년도 계획이 유럽을 요새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라 비판하는 동시에, 이에 대한 대책으로 EC기업과의 합병 및 매수와 해외직접투자 등을 통한 현지화전략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87년부터 1988년초까지 한해동안 EC 域內企業들과 域外企業들 사이의 국제적 합병 및 매수건수는 241%로 늘어났다. 또한 92년도 계획에 따라 EC 域內的 外國人投資가 대폭 증대되었다. 특히 일본의 경우 1988년 대EC 직접投資는 약 66억달러로서 1982년 약 6억달러에 비해서 약 11배나 증가되었다.<sup>37)</sup>

현재 우리 나라도 EC 投資進出을 서두르고 있으나 주로 전자부문위주의 투자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전자 이외에도 섬유, 기계 특히 자동차 부문등

주37) 일본의 대EC 해외직접투자가 이처럼 늘어나는 이유는 계속 증가되는 일본의 흑자재정의 원인일 수 있으나, 무엇보다도 92년도 계획에 의한 시장 확대와 이에 따르는 대외무역장벽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로서 대EC 직접투자가 일본전체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4년 12.7%에서 1988년 19%로 증가했으며,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직접투자는 1984년 25.2%에서 1988년 18.0%로 감소했다. 자료: Ilzkovitz, V., 1989, pp.5-7.



여러 분야에 걸쳐 投資進出을 서두르고 있는 일본기업의 경우를 거울삼아야 할 것이다.<sup>38)</sup>

한편 對EC 海外直接投資는 회원국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투자환경이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에 投資業種 및 地域選定에 대한 보다 세밀한 연구가 필요시 된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대EC 海外直接投資 決定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이 필요시된다.<sup>39)</sup>

우선 投資業種 선정에 있어서 市場需要가 커야 하며, 보다 새로운 기술습득이 가능해야 하고, 특히 EC域內市場의 확대로 보다 많은 經濟的 效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

〈表 5-2〉 EC海外直接投資時 考慮될 製品

| 市場需要가 높은 品目                                                | 技術水準이 높은 品目                                      | 市場擴大效果가 높은 品目                               |
|------------------------------------------------------------|--------------------------------------------------|---------------------------------------------|
| 1. 事務用 自動化機器<br>2. 化學 및 製藥<br>3. 電子製品<br>4. 電氣製品<br>5. 自動車 | 化學 및 製藥<br>電氣通信機器<br>航空機 産業<br>自動車 産業<br>電 氣 製 品 | 電氣製品<br>産業機械製品<br>化學 및 製藥<br>精密·醫療機械<br>自動車 |

資料 : European Economy, "International Trade of the European Community," No.39, Mar., 1989.; European Economy, "The Community Economy at the Turn of the Decade," No.42, Oct., 1989.; European Economy, "The economies of 1992," No.35, 1988.

최근 EC 역내에 이미 진출한 日本 企業들이 특히 自動車の 경우 現地部品 使用의 擴大를 강력히 요구받고 있으며 EC 執行機構는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EC 법규까지 개정하는등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sup>40)</sup> 우리 나라 기업의 경우에도 현지의 거부감을 最小化하기 위해서는 현지에서 생산되는 부품의 이용성을 높여 현지 企業化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나라의 EC 진출이 종래 大企業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나 현

주38) 한국무역협회, "EC의 통상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988, p.39.

39) 민충기, 전제서, pp.155-157.

40) KOTRA, "구주시장진출확대 전략", 1988, p.64.



재 EC 측이 바라는 것은 中小企業 레벨에서의 共同投資, 共同製造 및 技術提携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5. EC 通商傳聞人力의 養成 및 確保

서독의 서베를린 대학에 재직하고 있는 한국인교수의 지적에 따르면<sup>41)</sup> 우리 나라 기업들에게는 “유럽을 아는 기업 Manager”가 아주 극소수이며 현지에서 채용하는 유럽인의 能力, 實力 등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對應戰略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 내부에 對EC 통상을 전담할 傳聞人力을 양성하며 동시에 국내외로 부터 全擔人力을 확보하는 것도 게을리하지 말아야 겠다.

한편 이미 歐洲地域에 진출하여 있는 기업의 경우 현지인인 Manager에게 점차적으로 決定權의 폭을 넓혀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sup>42)</sup>

우리 나라 대학에서의 EC나 서구에 대한 강의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고 해야 할 것이다. 또한 日本과 같이 EC學會도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으므로 최소한 EC學會라도 만들어서 意見交換, 情報員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 6. 東歐共產圈 共同 進出 模索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東歐貿易을 시작하기 위한 여러가지의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 헝가리, 체코 등으로부터 시작하여 直接交易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 같다. EC국가들은 東歐貿易에서 절대적인 우위에 서 있는 이상, 또한 동구예의 전哨전인 EC인 이상 EC戰略은 일면 東歐進出戰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43)</sup>

주41) 박성조, “EC의 단일시장추진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 전경련세미나 자료, 88-17, PP 58-59.

42) 김승철, 전계논문, p.89.

43) 문병철, 전계서, p.125.



EC는 歴史的으로나 地理的으로 볼 때 東歐共產圈 國家들과 매우 밀접해 있으며, 특히 經濟分野에 있어서는 다른 先進國들보다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全體 西方世界들의 對유럽共產圈 輸出의 약 60%가 EC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의 東歐共產圈 國家들에 대한 海外 直接投資는 EC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특히 최근의 東歐共產圈의 開放과 EC의 共產圈 接近이 本格化됨에 따라서 EC-東歐共產圈 關係는 더욱 밀접해 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 나라는 이미 東歐權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유럽기업들과 共同進出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으리라 예상된다.<sup>44</sup> 특히 우리나라가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建設分野에 대한 共同投資를 모색할 수 있으며, 기타 産業分野에 있어서도 投資, 生産 및 마케팅의 共同協力を 통하여 유럽공산권 진출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주44) 민충기, 전거서, p.160.



## 第 6 章 要約 및 結論

EC는 1992년 까지 域內市場을 완전하게 統合키로 하고 이를 具體化하기 위한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1957년에 調印되어 EEC設立의 基礎가 되었던 로마조약(The Treaty of Rome)은 이미 加盟國間 각종 非關稅障壁을 撤廢하여 財貨와 生産要素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域內 共同市場의 創設을 明示적으로 規定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EC加盟國들은 1960년대중 關稅同盟과 共同農産市場을 結成하는 등 어느 정도의 진전을 보였으나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國際通貨 위기, 제1차 오일쇼크 등으로 유럽경제가 급격히 악화되자, EC 각국은 自國의 經濟政策에 주력할 수 밖에 없었고, 더우기 제2차 오일쇼크로 유럽경제의 부진이 장기화되자, EC의 經濟統合은 당초 일정에 비해 상당히 늦어졌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낮은 經濟成長, 産業構造 調整의 지연에 따른 높은 失業率, 貯蓄의 減退 등 EC경제의 장기적 침체와 일본 및 NICs의 경제적 부상은 EC로 하여금 EC經濟統合의 필요성을 再認識케 하였고, 이에따라 EC는 經濟統合을 촉진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강화하게 되었다. 즉 1985년 6월 或 域內市場統合白書를 作成, 1992년까지 實物 및 金融 양면에서 시장을 統合하기 위한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였는가 하면 1987년 7월에는 단일유럽의정서를 발효시킴으로써 市場統合을 制度的으로 뒷받침하기에 이르렀다. EC가 하나의 시장으로 합쳐질 경우 美國, 日本을 능가하는 커다란 단위 經濟權으로 등장하여 세계교역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등 EC가 世界經濟內에서 점하는 비중은 상당히 커지게 될 것이다.

EC의 統合이 域外國家에게 미치는 효과는 肯定的인 效果와 否定的인 效果가 존재하고 있다. 즉 EC의 92년도 계획에 따른 域內貿易障壁의 撤廢는 비용의 절감과 域內市場의 확대라는 점에서 會員國들 뿐만 아니라 제3국들의



對EC 수출에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일부 92년도 계획들은 제3국들에게는 무관한 것이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특히 域內市場 自由化에 따른 EC의 急速한 國際競爭力 향상으로 對EC 수출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한편 域內市場 自由化에 따른 다음과 같은 EC 對外貿易政策의 변화 역시 제3국들의 對EC 수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EC의 域內市場이 自由化됨에 따라 로마조약 115조에 의거한 域內間接輸入規制와 더불어 각 회원국들의 國別쿼터가 폐지됨으로써 제3국들에게 對EC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國別쿼터가 철폐되는 동시에 몇몇의 敏感品 품목에 대한 EC공동쿼터가 설정됨으로써,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은 新興工業國들은 對EC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域內市場이 自由化됨에 따라 EC는 域內産業保護를 위하여 原產地規定, 반덤핑, 企業合作 및 買收, 外國人 直接投資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문의 對外開放에 대해서는 GATT 우루과이 라운드에서 협상하는 것을 전제로 일단 보류하고 있어 제3국들로부터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즉 EC는 域外市場에 대한 기본 방향으로서 GATT정신에 입각한 相互間 利益의 均衡을 근거로 하여 개방을 천명하고 있으나 EC統合의 경제적 이익이 제3국에 잠식당하지 않도록 諸般 經濟的 裝置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EC의 保護主義的 潮流는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며, 그 강도는 더욱 더 강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경제는 EC시장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政策的 對應이 要望된다.

韓國經濟는 輸出主導型의 對外指向的인 開發戰略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의 성공 여부가 韓國經濟와 國民生活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韓國貿易의 최대 현안문제는 美·日에 偏重된 交易構造에 있으며 특히 최근 한국의 國際收支의 黑字에 따라 미국과의 교역에서 나타난 對美黑字의 擴大는 美國의 높은 保護貿易主義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對日貿易逆潮는 더욱 심화되어 지역간 貿易不均衡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對日輸入線의 전환과 貿易市場의 다변화가 요구되는데 이런 점에서 EC시장의 市場性과 韓國의 交易構造를 고려할 때 해당지역의 진출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EC는 한국의 급격한 對EC 輸出伸張과 韓國의 輸出商品 一部가 EC의 生産製品과 경쟁관계가 점차 치열하여짐을 우려하여 差別待遇原則을 부정하고 互惠原則에 입각한 交易關係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한국관의 변화로 EC의 한국에 대한 GSP축소 및 輸入規制가 더욱 강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EC의 新通商 政策과 對韓 通商政策 變化에 效率的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 나라는 다음과 같은 對應方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第1輸出市場으로서 EC지역의 重要性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對EC 交易의 均衡化를 추진해야 할것이다.

셋째, EC市場進出의 확대를 위해 輸出競爭力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내기업의 對EC 現地化戰略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EC通商 專門人力の 養成 및 確保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여섯째, EC와의 共同協力を 통하여 東歐共產圈 共同進出을 模索해야 할 것이다.



## Summary

The EC Full Economic Integration an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Korea.

MUN DAE-JA

Major in Business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

Hang Sung University

The EC countries are working for a "single market". Acting on the "Treaty of Rome" which was signed in 1957 and helped to establish EEC, the Member States have already removed a variety of non-barrier tariffs and tried to set up a "single market", which will guarantee a free moving of goods and services and capital among EC countries.

But in 1970's, the crisis of international money and the 1st oil crisis forced each of the EC countries to concentrate on his own economic interest.

Even at that, the long economic depressions facing European countries caused by the 2nd oil shock made the full integration of EC delayed considerably.

In 1980's, EC members have suffered from the low economic growth



rate and the growing unemployment and the declining saving rate, which, in turn, made EC countries speed up a market without frontier.

In addition to that, the sudden rise of NICs(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in Asia supported the speed up of a consolidated Europe.

In 1985, the EC members presented the "Intermarket Public white Paper" specifying the goal of full integration by the end of 1992, which helps to establish the integrated market for goods, finance and services, and they adopted the so-called "Single European Act" in July, 1987, which is the EC's constitution.

If the EC's plan to build up a integrated market by the end of 1992 succeeds, the world's biggest economic bloc, with combined Gross National Product equal to that of the U.S. and it's trade quantity amounting to a third of the whole world trade amount, come into existence.

The full integration of EC would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o the non-member countries.

While some advantages such as cost saving and expansion of intermarket coming from the remov of trade barriers can be expected, it is worried that the full integration will have more negative effects on the outside countries and the strong competitiveness the EC's goods will enjoy will bloc the influx of goods from the non-Member States.

It is likely that EC's change of its foreign policies would have desired -and undesired effects on the export of goods from the outside countries.



That the indirect import control and the quater system performed on nation -by- nation basis will be removed as EC's intermarket opens may have desired effects.

But a common control system of a few sensitive items which is certain to perform will have undesired effects on the export to EC from the NICs including Korea.

And it is expected that the regulation such as the certified original and the restriction of M&A and direct investment of foreign firms will be considerably intensified.

While EC makes public that it will open its doors for bilateral interests in accordance with following GATT's principle, EC seems to establish a variety of obstacles to the influx of foreign goods, which the non-Members are demanding to remove.

Anyway, this trend will continue and be intersified. To tak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C's full integration diverse polices are recommended. Whether the export of Korea will inclease or decrease have many effects on Korean economy and its living standard because Korea has long practiced the export-oriented poicies.

It is true that Korea's growing black-ink balance with the U.S. has continuasly increased.

So, Korea is desired to expand its trade markets and EC is considered as the best alternative.

EC tends to consider Korea as a high competitive country and wants a "fair trade practice" with Korea.

EC is withholding GSP for Korea and tightening its restriction of



the import from Korea.

To prepare for the EC's change of commercial policies,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are recommended for Korea.

The 1st, Korea is to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EC as its first potential export market.

The 2nd, Korea is to seek after its trade balance with EC.

The 3rd, Korea is to power its competitiveness of goods to increase its share in EC market.

The 4th, Korea firms are to work through on-the-spot investment.

The 5th, Korea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specialists on EC.

The 6th, Korea is to seek after cooperation advance into the East-european countries with EC.



## 参 考 文 献

### I. 國內書籍 및 論文

1. 경제기획원, EC구주통합의현재, 1987.
2. 국제경제연구원, 구주의 경제통합과 역내외 분업체계의 변천, 1980.
3. 김석중, EC의 역내시장통합추진, 대우증권조사월보, 1988, 9.
4. 김세원, 무역정책, 무역경영사, 1988.
5. \_\_\_\_\_, 한국의 국제경제정책, 무역경영사, 1985.
6. 김승철, EC통합추진과 우리의 대응전략, 한국외국어대학원, 1988.
7. 김윤환. 변형운, 한국경제론, 유풍출판사, 1978.
8. 김태희, 유럽시장통합의 내용과 그 영향, 수은조사월보, 1989, 2.
9. 대한무역진흥공사, EC설립조약집(Rome조약), 1978.
10. \_\_\_\_\_, EC공동관세율표, 1982-1986.
11. \_\_\_\_\_, 구주경제전망과 수출증대방안, 1988.
12. \_\_\_\_\_, EC의 주요 통상제도 해설(해외시장부록 85-5), 1985.
13. \_\_\_\_\_, 구주시장진출확대전략, 1988.
14. \_\_\_\_\_, 구주시장통합 및 우리의 대응, 1988.
15.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연구총서 142, 1983.
16. 문병철, EC통합과 한국경제의 대응방향, 입법조사월보, 1989, 12.
17. 민충기, EC 대외무역정책의 변화와 대응방향(EC통합과 정책대응:세미나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0.



18. 박성조, EC의 단일시장추진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EC통합과 한국기업의 대응전략:세미나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1988.
19. 박우희, 한국무역성장론, 박영사, 1983.
20. 반병길, 국제마케팅론, 박영사, 1987.
21. 산업연구원, EC 12개국의 현황과 현안문제, 1987.
22. 손상익.이경숙, EC 경제통합과 우리의 대응, 산업연구원, 1989.
23. 오재권.조승형, EC통합과 우리나라의 대응방향, 조사통계월보, 1989, 4.
24. 유영, 강화되는 한.유럽 경제협력, 세계경제동향, 1987, 3.
25. 이남구, 국제지역경제, 무역경영사, 1988.
26. 전국경제인연합회, 한.EC 교역현황과 확대방안, 1987.
27. 제일은행, 대EC 교역조건의 변화와 발전적 대응방안, 월간경제동향, 1988, 6.
28. 조덕구, EC경제에 대한 연구, 경제과학 심의위원회, 1974.
29. 한국무역협회, EC의 통상정책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1988.
30. \_\_\_\_\_, EC 시장단일화 추진현황과 우리의 대응, 무역, 1988, 5.



## II. 외국서적 및 논문

1. Balassa, Bela ed., European Economic Integration,  
Amsterdam:North Holland Publishing Company, 1975.
2. Commission of the EC, The European Perspectives Series,  
Brussels, 1984.
3. \_\_\_\_\_,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mmission's  
White Paper on Completing on Internal Market, COM(87)203, FINAL,  
11 MAY, 1987.
4. Danald T.Wilson,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 ,  
ST.PAUL:West Publishing Co., 1981.
5. EC Commission, The Economics of 1992, 1988.
6. GATT, Practical Guide to the GATT Agreement on Government  
Procurement, Feb., 1989.
7. Hartley, T.C., The Foundations of European Community Law,  
OXford:Clarendon, 1981.
8. Ilzkovitz, V., Evolution Recent Investissements Japonais et  
Américains dans la Communauté Européenne, Commission of the EC,  
Directorate General for Economic and Financial Affairs, Internal  
Paper, NO.V., 1989.
9. OECD, Financial Statistic Monthly, Section I, Jul., 1989.
10. Official Journal of the European Communities, NO.L339, 31 Dec.,  
1978.
11. \_\_\_\_\_, NO.L178, 22.,  
1982.



12. Swann, D., The Economics of the Common Market, Fifth Edition,  
Penguin Books, 1985.
13. The Bank of England, European Currency and European Central Bank  
-A BritishView, Quarterly Bulletin, May 1988.
14. The Economist, Europe's Internal Market, 9 Jul., 1988.